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차 례

I. 결산 개요(일반회계)	1
1. 조직 및 정원	1
2. 세입결산	3
3. 세출결산	4
4. 재무결산	7
5.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검토내용	10
II. 검토의견	14
1. 총괄 :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관련	14
가. 상용임금 결산 개요	14
나. 공무직근로자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	15
2. 인건비	1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8
나. 헌법연구관 구성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19
3. 본부기본경비	2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3
나. 재무결산 지원용역의 일반수용비 집행 개선 필요	24
다.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식 기념품 과다 제작	27
4.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2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9
나. 실소요 기반 예산 편성으로 집행률 제고 필요	30

5. 재판활동운영지원	3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5
나. 헌법재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36
6. 본부운영지원	4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5
나. 위원회를 통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도입 필요	46
다.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는 공사비 낙찰차액 사용 문제	50
7.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5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53
나. 특정 업체와의 발간물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54
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참여 및 수상작 활용도 제고 필요	59
8. 국제교류	6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62
나. 국외업무여비 집행 부진	63
9. 재판자료확충	6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65
나. 연례적 발간물의 발간 수량 재검토 필요	66
10.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	7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70
나. AACC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 시 사전 계획 미흡	71
다.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 활성화 필요	73

<참고자료>

1. 최근 3년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79
2.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처리 현황	109
2. 2023년도에 처리된 2022. 12. 31. 기준 4년 경과 사건 목록	112

<헌법재판소 정원 및 현원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합계	정무직	특정직	특정직 · 일반직	별정직	일반직
합계	정원	348	11	63	12	2	260
	현원	324	11	57	7	1	248
본부	정원	310	11	63	2	2	232
	현원	292	11	57	1	1	222
소속	정원	38	—	—	10	—	28
	현원	32	—	—	6	—	26

주: 현원의 경우 별도 정원(6개월 이상 휴직, 파견 및 교육훈련자 등) 제외
 자료: 헌법재판소

2.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C/A (%)	C/B (%)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39	36	36	91.9	100.0	0	0

자료: 헌법재판소

-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3,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00만원이며, 세입징수액은 전년 4,500만원¹⁾ 대비 20%가 감소한 3,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됨.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연가보상비 반납액 등 500만원, 면허료및수수료는 채용 응시료 500만원, 기타잡수입은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및 정보공개수수료 등 2,600만원임.

<2023년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A)	결산(B)	B/A(%)	
기타경상이전수입	73	23	10	5	50.0	610
면허료및수수료	3	5	9	5	55.6	9
기타잡수입	20	17	20	26	130.0	22
총 계	96	45	39	36	91.9	641

자료: 헌법재판소

1) 2022년도의 경우 기타경상이전수입은 23백만원, 면허료및수수료는 5백만원, 기타잡수입은 17백만원임

3.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당 초 예산액	예산 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금 사용액	전용 증(△)감액				
55,492	—	—	—	55,492	53,752 (96.9%)	—	1,740 (3.1%)

자료: 헌법재판소

-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554억 9,200만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9%인 537억 5,2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인 17억 4,000만원임.
- 지출액 537억 5,200만원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309억 9,500만원
기본경비로	66억 8,600만원
재판활동지원사업으로	7억 300만원
본부운영지원사업으로	35억 8,700만원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사업으로	18억 3,700만원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10억 8,100만원
정보자료운영사업으로	88억 6,200만원

각각 지출되었는바, 인건비와 물건비가 494억 9,800만원²⁾으로 전체 지출액 중 92.1%를 차지하고 있음.

2) 성질별 세출실적: 인건비 329억 2,000만원, 물건비 165억 7,800만원, 이전지출 3억 7,500만원, 자산취득 38억 7,900만원(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보고서, p. 14)

□ 불용액 17억 4,000만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휴직 및 퇴직·신규채용 공백기간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0억 300만원,

각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물건비 4억 7,500만원, 이전지출 6,700만원, 유형자산 등 자산취득비 1억 7,100만원, 예비금 2,500만원이 각각 불용됨.

< 2023년도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B/A (%)	
			본예산	추경(A)			
총 계	48,801	50,072	55,492	55,492	53,752	96.9	56,766
1000 헌법재판소운영	48,801	50,072	55,492	55,492	53,752	96.9	56,766
1001 인건비	29,167	29,813	31,860	31,860	30,995	97.3	33,533
인건비 (1001-150)	29,167	29,813	31,860	31,860	30,995	97.3	33,533
1011 기본경비	5,635	6,088	6,967	6,967	6,686	96.0	7,432
본부기본경비 (1011-250)	4,962	5,680	6,506	6,506	6,270	96.4	6,991
헌법재판연구원기본경비 (1011-251)	673	408	461	461	416	90.2	441
1031 재판활동지원	650	733	732	732	703	96.0	875
국선대리인보수등 (1031-300)	106	106	127	127	119	93.8	127
재판활동운영지원 (1031-301)	544	627	605	605	584	96.5	748
1032 본부운영지원	3,720	3,536	3,926	3,926	3,587	91.4	4,624
본부운영지원 (1032-302)	3,720	3,536	3,926	3,926	3,587	91.4	4,624
1033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19	1,825	1,867	1,867	1,837	98.4	1,878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1033-303)	1,819	1,825	1,867	1,867	1,837	98.4	1,878
1034 국제교류협력	752	967	1,153	1,153	1,081	93.8	1,093
해외연수 (1034-304)	455	518	580	580	580	100.0	506
국제교류 (1034-305)	297	449	573	573	501	87.6	587
1035 정보자료운영	7,058	7,110	8,962	8,962	8,862	98.9	7,306
재판자료확충 (1035-306)	357	367	420	420	402	95.7	470
헌법재판정보화 (1035-500)	6,421	6,451	8,242	8,242	8,163	99.0	6,443
전자도서관운영 (1035-501)	280	292	300	300	297	99.0	393
1036 예비금	-	-	25	25	-	-	25
헌법재판소예비금 (1036-307)	-	-	25	25	-	-	25

자료: 헌법재판소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A)	2022(B)	증 감(A-B)	
			금 액	비 율 (%)
자 산	214,118	211,852	2,266	1.1
부 채	3,819	4,098	△279	△6.8
순자산	210,299	207,755	2,544	1.2

자료: 헌법재판소

□ 2023회계연도 말 헌법재판소 자산은 2,141억 1,8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대비 22억 6,600만원(1.1%) 증가함.

- 유동자산이 6억 1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5억 6,300만원, 무형자산이 17억 2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비유동자산이 6억 200만원 감소하였음.

□ 2023회계연도 말 부채는 38억 1,9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대비 2억 7,900만원(6.8%) 감소함.

- 유동부채가 6,9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2억 900만원 감소함.

□ 2023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2,102억 9,9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대비 25억 4,400만원(1.2%) 증가함.

나. 재정운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A)	2022(B)	증 감(A-B)	
			금 액	비 율 (%)
I. 프로그램순원가 ³⁾	56,245	53,758	2,487	4.6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⁴⁾	—	—	—	—
IV. 비배분수익 ⁵⁾	36	45	△9	△20.0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56,209	53,712	2,497	4.6
VI. 비교환수익 등 ⁶⁾	—	—	—	—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56,209	53,712	2,497	4.6

자료: 헌법재판소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562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9,700만원(4.6%) 증가함.

- 프로그램순원가 562억 4,500만원에서 수수료수익 등의 비배분수익 3,6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재정운영순원가는 562억 900만원임.

3)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차감한 순원가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경우 ‘[1000] 헌법재판소운영’의 1개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음.

4)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비용(자산재평가손실, 자산처분손실 등)을 말함.

5)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이자수익, 자산재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 등)을 말함.

6)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등을 말함.

다. 순자산변동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A)	2022(B)	증 감(A-B)	
			금 액	비 율 (%)
I.기초순자산	207,755	206,482	1,273	0.6
II.재정운영결과	56,209	53,712	2,497	4.6
III.재원의조달및이전	58,753	54,985	3,768	6.9
IV.조정항목	—	—	—	—
V.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210,299	207,755	2,544	1.2

자료: 헌법재판소

- 2023회계연도 말 기초순자산은 2,077억 5,5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562억 900만원임.

재원의조달및이전은 587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6,800만원 (6.9%) 증가하였음.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금액을 합계한 금액인 기말순자산은 2,102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5억 4,400만원(1.2%) 증가함.

5.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검토내용

- 헌법재판소는 2023년도에 주요 정책목표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국민이 만족하는 헌법재판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국제적 리더십 강화 등을 설정하였음.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반회계 13개의 세부사업 수행을 통하여 인력 증원과 시스템 구축 등 물적 확충을 통한 심판사건처리 지원 기반 강화, 풍부한 전자도서관 콘텐츠 확충,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직무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보호 강화 및 국제회의 참여 등을 추진하였음.

-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554억 9,200만원 중 537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하여 2023년 집행률은 96.9%임.

-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결산을 분석한 결과,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근로자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만을 도입하고 있는데 공무원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및 후생 증대 차원에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헌법재판은 헌법을 통한 여러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 다

양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이 요구되므로 헌법연구관의 구성 또한 다양한 배경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바 비법조인 출신이 2명('24년 6월말 기준)에 불과한 헌법연구관 구성을 개선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셋째, 본부기본경비 사업에서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식 진행과 관련해서는 기념품을 참석인원 대비 과다하게 제작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기념식 등 행사 계획 및 진행 시 참석인원을 고려하여 기념품을 제작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넷째,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세목 중 4개 세목(특근매식비, 임차료, 유류비, 직책수행경비)에서 기본경비 전체 불용액의 73%가 발생하는바 전년도에 준한 관례적 편성이 아닌 실소요를 감안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 본안심리에서 처리된 헌법재판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약 2년 3개월에 이르고 있는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미제부와 사전심사부 설치에 따른 영

향과 성과를 분석하여 연구부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동일인에 의한 다량의 헌법재판 청구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본부운영지원 사업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내규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동 내규에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점검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둬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본부운영지원사업의 공사비를 집행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진행한 것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낙찰차액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및 운영지원 사업에서 특정업체와 발간물 수의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고, 연구보고서 발간용역을 경쟁입찰이 아닌 두 차례 분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는 향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에서 수행하는 우수헌법수업 경연대회와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대회 참여율 및 동 경연대회 수상작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국제교류사업 세부사업 내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등 내역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산안 편성 시 국제회의 참석 및 초청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재판자료확충 사업을 통해 매년 발간해오고 있는 연례적 발간물의 경우 배부수량의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해 책자 발간을 지양하고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판결 등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법률정보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열째,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를 구축함에 있어 구축·운영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아니하여 2023년 11월에 동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2024년 7월에서야 그 운영을 개시하였는바 향후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시 관련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0년 3월부터 제공된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헌법재판의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 등의 활용도가 10년이 훨씬 경과한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바('23년 기준 전자접수율 51.3%, 전자송달율 39.2%) 국민의 헌법재판 접근에 대한 편의 도모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II. 검토의견

1. 총괄 : 공무원근로자 퇴직급여 관련

가. 상용임금 결산 개요

□ 헌법재판소의 공무원근로자를 고용하는 예산은 본부기본경비(1011-250) 사업과 본부운영지원(1032-302) 사업에 상용임금(110-03)으로 편성되어 있음.

- ①2023년도 본부기본경비 사업 예산액 7억 2,200만원 중 6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②2023년도 본부운영지원 사업 예산액 12억 4,600만원 중 11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을 불용하는 등 ③총 18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헌법재판소 공무원근로자 관련 상용임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세부사업명	목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①본부기본경비	상용임금 (110-03)	722	722	664	58	778
②본부운영지원	상용임금 (110-03)	1,246	1,246	1,166	80	1,279
③합 계		1,968	1,968	1,830	138	2,057

자료: 헌법재판소

나. 공무원근로자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

□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⁷⁾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로 구분됨.
- 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반면,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 퇴직급여제도 비교 >

구 분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제도 개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손익에 따라 변동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사용자	근로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담보제공	불가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연금제도 정책소개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헌법재판소는 2023년 말 기준 55명의 공무원근로자를 고용하면서 DC형 퇴직연금제도만을 도입하여 근로자 전원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 2023년도 헌법재판소 공무원근로자 고용 현황 >

세부 사업명	비목	2023년 결산액 (천원)	공무직 근로자 직무	공무직 근로자 정원	공무직 근로자 현원	평균 근속연수
본부 기본경비	상용임금 (110-03)	664,000	사무, 조리, 운전 등	22명	20명	약 7년 10개월
본부 운영지원		1,166,000	시설관리, 환경미화	37명	35명	약 3년 6개월
합 계				59명	55명	

자료: 헌법재판소

-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DB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 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근로자는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됨.

- 공무원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을 선호할 경우 기존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고,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선호할 경우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⁸⁾.

- 둘째,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적립된 부담금만을 퇴직급여로 받게되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전

8)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용자가 DB형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할 경우 DC제도 적립금은 DB제도로 이전 불가하나, 그 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함(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업무메뉴얼」, 2019. 8.).

평균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⁹⁾하게 되어 DB형 퇴직연금이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퇴직급여가 많게 됨.

- DC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¹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실제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근로자들은 원금보장형을 선택하여 사실상 퇴직급여의 운용을 통한 수익률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라면 DC형 퇴직연금보다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DB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 운용하고 있고, 법원은 기본적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¹¹⁾.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근로자의 후생 증대 차원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 추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0)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

11) (법원)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행정예규 제1358호, 시행 2023. 11. 21.]」 제44조 (퇴직급여)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는 각급 기관별로 정한다.

2. 인건비(1001-15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¹²⁾의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2023년도 예산액 318억 6,000만원 중 309억 9,500만원이 집행되고 8억 6,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인건비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인건비	31,860	—	31,860	30,995	865	33,533
보수(110-01)	30,100	—	30,100	29,389	711	31,760
기타직보수(110-02)	1,543	—	1,543	1,431	112	1,539
연가보상비(110-05)	217	—	217	175	42	234

자료: 헌법재판소

12) 직제상 정원 348명, 별도정원 11명, 기타직 22명(청원경찰 5명, 전문임기제 17명)

나. 헌법연구관 구성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¹³⁾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주로 본안 사건 심리를 위하여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 관계 법령, 관계 기관의 의견서 등을 사전분석·검토하고, 전원재판부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재판부의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현황 >

(2024. 6. 30. 기준)

구 분			헌법연구관		파견 법관	파견 검사	담당 업무
			정원	현원			
헌법 재판소 연구부	연구부 행정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비서관, 기획심의관, 공보관)		66	5	-	-	연구부 총괄 및 행정
	전속부			34	8	3	재판관에 배속되어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사전심사부			6	-	-	접수된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여부 검토
	공동부	자유권부		19	1	1	재판관에 배속되지 않고 사건의 심리 및 심 판에 관한 조사연구
		재산권부					
		사회권부					
헌법재판 연구원	연구교수부장		9	1	-	-	연구교수부 총괄
	제도연구팀장			1	-	-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개발 등 총괄
	기본권연구팀장			-	-	-	기본권 등 국내외 이론 연구 총괄
	비교헌법연구팀장			1	-	-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 태 조사 분석 등 총괄
	교육팀	교육팀장		1	-	-	교육팀 총괄
		교수		1	-	-	각종 교육계획 수립 및 강의
		합계		75	69 ¹⁴⁾	9	4

자료: 헌법재판소

- 13)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 14)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파견·연수로 별도정원 5명을 운용하고 있고, 휴직자가 4명이 있어 해당 시점 전
 체 헌법연구관은 78명임.

-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하여 헌법연구관 구성에서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¹⁵⁾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2024년 6월 말 기준 현재 헌법연구관 중 비법조인 출신은 2명에 불과함¹⁶⁾.

< 임용요건¹⁷⁾에 따른 헌법연구관 현황 >

(2024. 6. 30. 기준)

자격요건별 구분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사무를 한 사람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사무를 한 사람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법률사무를 한 사람	합계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76명(97%)	-	-	2명(3%)	-	78명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은 법령 및 처분의 헌법적 정당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다루는 민사·형사 재판과는 차이가 있으며 헌법을 통한 여러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학 등에 관한 폭넓은 지식이 요구됨. 이를 위해 재판 과정에서 헌법연구관에 의한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관련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헌법연구관의 구성 또한 다양

15) 2023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회의록 8P

16) 헌법연구관 중 해당 시점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76명이며, 그 중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은 각각 2명, 4명임.

17)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한 배경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 임용과정에서 전문분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조인 출신의 지원비율이 94%를 상회¹⁸⁾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채용하는 것에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다고 함.

< 헌법연구관 학위별 전공 >

(2024. 6. 30. 기준)

구분	법학	비법학				합계
		경영·경제 계열	사회과학 계열	인문·교육 계열	자연과학·공학 계열	
학사	47명	8명	11명 [●]	8명 [●]	4명	78명
석사	55명	1명 [■]	-	-	1명 [■]	57명
박사	11명	-	1		-	12명

● 법학 복수전공 1명 포함

■ 법학 포함 2개 학위 보유

자료: 헌법재판소

- 법조인 이외의 헌법연구관의 자격이 주로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다소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임용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비법조인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및 헌법연구관을 충원하면서 특정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8) 「헌법재판소법」 제19제4항제1호에 따른 지원비율: 21년 99%, 22년 99%, 23년 94%, 24년 97%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을 채용함에 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법조인 이외 전문가의 지원율을 높이도록 하고, 내부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각종 유인책을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심판사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본부기본경비(1011-25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본부기본경비 사업은 헌법재판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인 운영경비로 2023년 예산액 65억 600만원 중 62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본부기본경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본부기본경비	6,506	6,506	133 △133	6,506	6,270	—	236	6,991
인건비	741	741	—	741	682	—	59	800
운영비	2,967	2,967	117 △117	2,967	2,883	—	84	3,037
여비	140	140	16 △16	140	140	—	—	143
업무추진비	466	466	—	466	464	—	2	540
직무수행경비	1,788	1,788	—	1,788	1,720	—	68	1,764
보전금	2	2	—	2	—	—	2	2
민간이전	158	158	—	158	137	—	21	173
유형자산	244	244	—	244	243	—	1	131
무형자산	—	—	—	—	—	—	—	400

자료: 헌법재판소

나. 재무결산 지원용역의 일반수용비 집행 개선 필요

- 헌법재판소는 연례적으로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재무결산 지원용역 1,2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 최근 3년간 재무결산 지원용역 집행 현황 >

세부사업명	비목	연도	지출일자	금액	용역 주요내용
본부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2021	2021. 2. 9.	4,500천원 (선금)	재무제표 기초자료 구성, 중앙관서재무제표 및 재무결산보고서 작성지원 등
			2021. 9. 17.	4,500천원 (잔금)	
			합 계	9,000천원	
		2022	2022. 4. 1.	4,500천원 (선금)	
			2022. 9. 16.	4,500천원 (잔금)	
			합 계	9,000천원	
		2023	2023. 3. 10.	6,000천원 (1차 선금)	
			2023. 7. 27.	3,600천원 (2차 선금)	
			2023. 10. 4.	2,400천원 (잔금)	
			합 계	12,000천원	

자료: 헌법재판소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은 일반용역비(210-14)를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수용비를 '사무용품 구입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 구분 >

목번호	목	세목(내역)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8. 광고료 및 광고료 9.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10.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11. 기타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12.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
		210-14 일반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자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3. 1.)

□ 헌법재판소는 재무결산 지원용역이 일종의 자문에 해당하여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는 입장이나, 재무결산 지원용역은 수행기간¹⁹⁾이 정해진 계약이라는 점에서 일회성인 자문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국가회계법」 등에 의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작성, 결산자료 간 계수검증 등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 동 용역계약의 주된 과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여야 함.

- 참고로 법원도 이러한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하고 있음²⁰⁾.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지 않고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19) 2023년의 경우 2023년 1월 30일부터 2023년 9월 3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음.

20) < 대법원 2023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

[단위 : 천원, 1\$]

2023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14]일반용역비		339,296	
1.재무결산업무 회계법인 일반용역비	30,000,000원=	30,000	

다.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식 기념품 과다 제작

-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1일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진행하면서 일반 수용비 1,285만원, 일반용역비 4,659만원, 업무추진비 463만원을 집행하였음.

<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행사 관련 예산집행 현황 >

비 목	집행액 (만원 이하 반올림)	주요 내용
일반수용비	1,285만원	기념품 제작 비용
일반용역비	4,659만원	창립 35주년 기념식 행사대행용역 비용
업무추진비	463만원	창립 35주년 기념식 오찬 비용
합 계	6,407만원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 재구성

- 헌법재판소가 집행한 일반수용비는 기념식에 참석하는 내외부 인사에게 배부하는 기념품 제작을 위한 것으로²¹⁾, 헌법재판소는 무선충전 탁

21) <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품 및 배부 대상 >

○ 기념식장 입장 시 외부인사에 한해 배부(종이백에 담아 배부) ○ 내부인사는 기념식 종료 후 9. 1.(금) 오후 일괄 배부 ○ 식전환담인사는 해당 좌석 아래 기념품 종이백 배치		
무선충전 탁상시계	가격	규격
	16,000원 (부가세 별도)	- 규격: 150*70*70mm - 색상: 블랙, 우드 - 원산지: 중국

자료: 헌법재판소

상시계(단가 16,000원, 부가세 별도)를 730개 제작하였다고 함.

□ 그런데 동 행사의 참석인원을 살펴보면, 초청인원은 393명이고, 참석인원은 173명으로 이에 비해 기념품 제작 개수가 현저히 많음.

- 일반적으로 기념품이 부족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념품을 넉넉하게 제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초청 인원 수의 2배 가까이 되는 기념품을 제작한 것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행사 관련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명)

구분	전직 재판소 주요 인사	지문위원 등	법학계	법조단체 대표	지역 대표	언론계	추가 초청	내부 인사	합계
초청	59	40	70	15	8	42	25	134	393
참석	14	5	19	6	2	1	5	121	173

자료: 헌법재판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기념식 등 행사 계획 및 진행 시 기념품을 과도하게 제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1011-25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사업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및 연례적·반복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등을 포함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액 4억 6,100만원 중 4억 1,600만원이 집행되고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461	—	461	416	—	45	441
운영비	285	—	285	253	—	32	272
여비	13	—	13	13	—	—	13
업무추진비	44	—	44	44	—	—	44
직무수행경비	83	—	83	71	—	12	78
유형자산	36	—	36	36	—	—	34

자료: 헌법재판소

나. 실소요 기반 예산 편성으로 집행률 제고 필요

-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써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등 경상적 경비,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직책수행경비 등이 이에 해당함.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의 최근 4년 집행률을 확인해 보면 지속적으로 약 10% 정도의 불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4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711	711	-	△10	-	701	617 [617]	86.8	88.0	-	84
2021	710	710	-	21	-	731	673 [673]	94.8	92.1	-	58
2022	463	451	-	-	-	451	408 [408]	90.5	90.5	-	43
2023	461	461	-	-	-	461	416 [416]	90.2	90.2	-	45

자료: 헌법재판소

- 2023년도 결산 세부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특근매식비(210-05), 임차료(210-07), 유류비(210-08), 직책수행경비(250-02) 세목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 4개 세목의 불용액 합계가 3,300만원으로 기본경비 전체 불용액 4,500만원의 약 73%에 이르고 있음.

< 2023년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결산 세부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목 코드	목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10-01	일반수용비	160	160	-	-	-	160	156	-	4
210-02	공공요금및제세	58	58	-	-	-	58	53	-	5
210-05	특근매식비	9	9	-	-	-	9	3	-	6
210-07	임차료	25	25	-	-	-	25	17	-	8
210-08	유류비	11	11	-	-	-	11	4	-	7
210-09	시설장비유지비	1	1	-	-	-	1	-	-	1
210-16	기타운영비	19	19	-	-	-	19	19	-	-
220-01	국내여비	3	3	-	-	-	3	3	-	-
220-02	국외업무여비	10	10	-	-	-	10	10	-	-
240-02	관서업무추진비	44	44	-	-	-	44	44	-	-
250-02	직책수행경비	83	83	-	-	-	83	71	-	12
430-01	자산취득비	36	36	-	-	-	36	36	-	-
합 계		461	461	-	-	-	461	416	-	45

자료: 헌법재판소

- 특근매식비는 하루 2시간 이상 업무시간 외 근무를 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7,000원(1식 1인 기준)의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되어지는데, 매년 얼마나 집행되어질지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다하더라도 최근 3년 50%를 넘는 불용률은 과도하다고 보여짐.

< 최근 4년 특근매식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내역변경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020	12	-	12	8	-	4	33.3%
2021	12	-	12	5	-	7	58.3%
2022	12	-	12	3	-	9	75.0%
2023	9	-	9	3	-	6	66.7%

자료: 헌법재판소

- 임차료는 업무용 차량(2,340만원 편성) 및 교육용 버스(200만원 편성)의 임차를 위하여 편성되어진 세목²²⁾으로 업무용 차량의 임차를 위한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임차료 지출은 예산편성 시 이미 예측²³⁾할 수 있는바 과다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 임차료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내역변경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2020	25	-	25	16	-	10	40.0%
2021	25	△10	15	15	-	-	-
2022	25	△1	24	15	-	9	37.5%
2023	25	-	25	17	-	8	32.0%

자료: 헌법재판소

- 유류비는 관용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편성되어진 세목으로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은 2대의 업무용 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집행

22) 집행액은 업무용 차량 임차: 14,856천원, 교육용 버스 임차: 1,950천원임

23) 헌법재판연구원은 업무용 차량을 각각 2020년 5월, 2020년 7월부터 5년 임차하였고, 총 임차금액은 74,280천원으로 2024년에는 해당 금액의 1/5인 14,856천원의 임차료를 예측할 수 있었음.

율이 50%를 하회하여 저조함. 특히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2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집행액은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이 줄어들어 불용율이 63.6%에 달함.

< 최근 4년 유류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내역변경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2020	9	-	9	3	-	6	66.7%
2021	9	-	9	3	-	6	66.7%
2022	9	-	9	5	-	4	44.4%
2023	11	-	11	4	-	7	63.6%

자료: 헌법재판소

- 직책수행경비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월별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최근 4년 직책수행경비 지급 추이를 살펴볼 때 대략 집행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기 어려운 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 4년 직책수행경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내역변경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2020	83	△ 10	73	73	-	-	-
2021	83	△ 14	69	69	-	-	-
2022	83	-	83	73	-	10	12.0%
2023	83	-	83	71	-	12	14.5%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2023년도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관련 세목들의 2024년도 예산을 소요에 맞게 감액²⁴⁾편성하였고, 기본경비의 성격상 한 번 감액이 이루어지면 증액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함.
-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본경비는 최근 수년간의 이·전용, 불용 등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헌법재판소는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전년도에 준한 관례적 편성이 아닌 실소요를 감안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4) 특근매식비: 9백만원('23)→7백만원('24), 임차료: 25백만원('23)→17백만원('24), 유류비: 11백만원('23)→9백만원('24), 직책수행경비: 83백만원('23)→78백만원('24)

5.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 처리사건의 양적 증가와 심판대상 다양화 및 전문화 경향에 대응하여 재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충실한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재판활동과 관련된 사업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및 헌법재판소장의 자문기구인 헌법 및 헌법제도 연구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액 6억 500만원 중 5억 8,400만원이 집행되고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재판활동운영지원	605	—	605	584	—	21	748
헌법재판업무지원	231	—	231	216	—	15	247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등 운영지원비	246	—	246	246	—	—	221
기록물 관리 및 보존	89	—	89	85	—	4	54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10	—	10	7	—	3	10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30	—	30	30	—	—	30
기록물보존서고 RFID 설비 구축	—	—	—	—	—	—	186

자료: 헌법재판소

나. 헌법재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3년도 본안심리에서 처리된 헌법재판 사건들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2년 3개월임. 이는 2014년도의 약 1년 6개월보다 9개월이, 접수건수가 2,000건을 넘어선 2017년도의 약 1년 1개월보다는 1년 2개월이 길어진 기간임.

< 2014년도 이후 연도별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 현황 >

(단위: 건)

연 도	신규접수	처리사건				미제 ²⁵⁾
		취하(A)	지정부각하(B)	전원부 본안심리 처리(C) (건 / 처리기간)		합계(D)
2014	1,969	23	1,478	387	542.5(약 1년 6개월)	1,888
2015	1,859	26	1,344	567	535.1(약 1년 6개월)	1,937
2016	1,951	61	1,342	573	463.4(약 1년 3개월)	1,976
2017	2,626	25	2,031	369	385.8(약 1년 1개월)	2,425
2018	2,427	50	1,796	601	609.3(약 1년 8개월)	2,447
2019	2,730	46	2,018	455	521.9(약 1년 5개월)	2,519
2020	3,241	54	2,467	521	640.8(약 1년 9개월)	3,042
2021	2,827	52	2,060	509	661.6(약 1년 10개월)	2,621
2022	2,829	39	2,201	435	779.1(약 2년 1개월)	2,675
2023	2,591	42	1,938	679	835.3(약 2년 3개월)	2,659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38조²⁶⁾는 심판절차의 종류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공정하고 적

25) 전년도까지 접수되어 처리되지 않은 사건과 당해연도에 접수되어 처리되지 않은 사건의 합(해당 연도 말 기준)

26)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결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결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규정을 혼시적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음²⁷⁾.

- 2023년 말 현재 평균 처리기간인 2년 3개월은 법률상 처리기간인 180일을 4배 이상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²⁸⁾에서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바 심판사건의 처리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매년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증가²⁹⁾하고 있고, 일부 헌법재판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해당 연도 말까지 처리되지 못한 미제 헌법재판의 수가 점점 늘어나 2023년 말 기준 1,600건을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

27) 2009. 7. 30.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이 국가작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180일의 심판기간은 개별사건의 특수성 및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적절한 헌법재판을 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기간 경과 시의 제재 등 특별한 법률효과의 부여를 통하여 심판기간의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혼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는 심판기간은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획일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을 이룬다거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함 다음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모든 헌법재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내리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으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오히려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공정하고 적절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8)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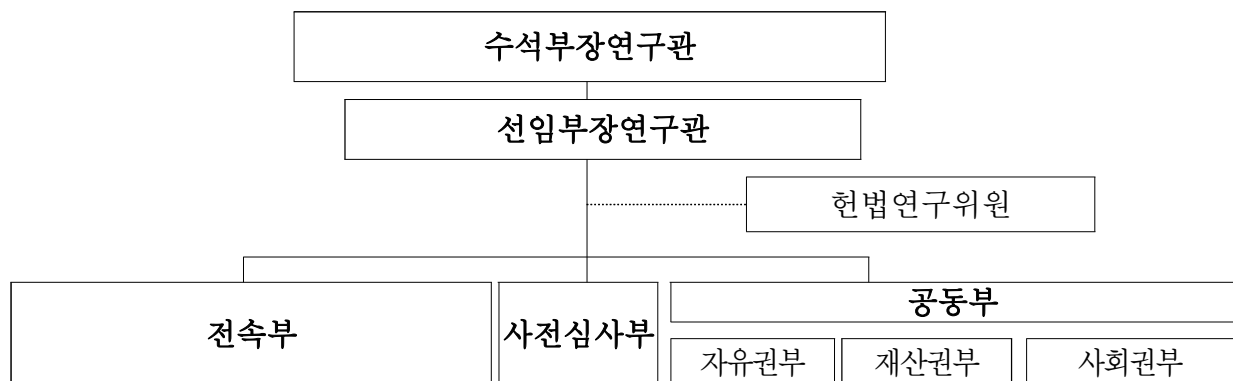
29) <참고자료> 2.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처리 현황, P109

- 신속한 국민의 권리 구제 및 빠른 분쟁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을 위해서는 적시에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을 현재보다 단축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임.

(1) 연구부의 효율적 운영

- 헌법재판의 재판부는 본안 판결을 담당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와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로 되어 있는데, 주로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연구부는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지정재판부에 보고하는 사전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전원재판부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구보고서의 작성을 통하여 재판부를 지원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연구부 조직 >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지원하여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하고 있는 헌법연구관³⁰⁾의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해 보이거나 이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임³¹⁾.

< 연구부 헌법연구관 정원 및 현원 현황 >

(2024. 6. 30. 기준)

구 분		헌법연구관		파견 법관	파견 검사	담당 업무	
		정원	현원				
헌법 재판소 연구부	연구부 행정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비서실장, 기획심의관, 공보관)		66	5	-	-	연구부 총괄 및 행정
	전속부			34	8	3	재판관에 배속되어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
	사전심사부			6	-	-	접수된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여부 검토
	공동부	자유권부		19	1	1	재판관에 배속되지 않고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 한 조사연구
		재산권부					
사회권부							
합계			66	64	9	4	

자료: 헌법재판소

- 이에 연구부 조직과 인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헌법재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연구부 중 공동부 내에 장기미제부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음(2023. 2. 12. ~ 2024. 2. 18.). 「헌법재판소법」 제34조제1항 단서³²⁾를 근거로

30)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31) 최근 5년 헌법연구관 증원 내역: 2019년 3명, 2020년 3명, 2021년 1명, 2022년 4명, 2023년 3명

32) 「헌법재판소법」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

장기미제부에서 어떤 사건을 검토하였는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2023년도에 헌법재판소는 2022. 12. 31. 기준 4년 경과 장기미제사건 46건 중 41건에 대해 종국결정을 선고³³⁾하였음.

- 또한, 올해 헌법재판소는 연구부 내에 지정재판부 사전심사³⁴⁾의 지원을 전담하는 사전심사부를 신설(2024. 2. 19.)하였음.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의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사전심사(30일 이내 요건심사)를 위한 연구·조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과도한 사전심사량이 헌법재판 처리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전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추후 장기미제부와 사전심사부 설치가 헌법재판 처리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조직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심판업무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과 적재적소의 헌법연구관 배치로 연구부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헌법재판이 적절한 기간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청구 남발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 필요

- 2023년도에 50건 이상의 헌법재판을 청구한 동일인은 6명으로 그 접수건수는 총 접수건수 2,591건 대비 926건(35.7%)에 이르고 있음.

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3) <참고자료> 3. 2023년도 처리된 2022. 12. 31. 기준 4년 경과 사건 목록, 112P

34)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최근 5년 동일인이 50건 이상 청구한 헌법재판 현황 >

연 도	접수 건수	동일인이 50건 이상 청구		
		동일인 수	건수	전체접수 대비 비율
2019	2,730	6명	1,027	37.6%
2020	3,241	6명	1,193	36.8%
2021	2,827	5명	846	29.9%
2022	2,829	7명	1,112	39.3%
2023	2,591	6명	926	35.7%

자료: 헌법재판소

□ 동일인에 의한 다량의 헌법재판 청구는 복잡다기한 법적분쟁 및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으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면이 있으나, 재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헌법상의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일인에 의한 다량 청구의 건 대부분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원재판부 심사 전 각하³⁵⁾되고 있는 실정임.

35)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최근 5년 동일인이 50건 이상 청구한 헌법재판 처리 결과 >

(단위: 건)

연 도	동일인이 50건 이상 청구한 건수	결 과		
		각하	합헌	심리중
2019	1,027	1,021	6	-
2020	1,193	1,192	1	-
2021	846	845	1	-
2022	1,112	1,109	-	3
2023	926	923 ³⁶⁾	-	3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2021년 ‘남소사건 처리방안 검토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022. 9. 28.)하여 남소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헌법재판센터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³⁷⁾을 마련하였음.
- 해당 규정은 단지 전자접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일 뿐 실질적으로는 서면접수가 가능해 그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해당 규정에 따라 전자접수가 제한되어진 경우는 없었음.

36) 각하된 923건 중 922건(5건은 다른 각하사유와 중복)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로써 ①청구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 ②구체적 주장이 없는 청구인 경우, ③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의 청구인 경우 등임.

37)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사용자등록·철회 등)

① ~ ③ (생략)

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

2.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3.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⑤·⑥ (생략)

□ 「헌법재판소법」 제37조³⁸⁾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구 남발 등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활용되고 있지 않음.

- 헌법재판소는 ‘남소사건 처리방안 검토 T/F’의 검토 결과³⁹⁾ 현행법의 공탁금 납부명령 대상이나 국고귀속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공탁금 처리와 관련된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탁금 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로써 헌법재판소규칙으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활용하고 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동일인에 의한 다량의 헌법재판 청구로 인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헌법소원 제도를 위축시키지 아

38) 「헌법재판소법」 제37조(심판비용 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9) T/F팀 공탁금 제도 검토의견: 공탁금의 납부명령 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고, 남소 방지의 효과는 미미해질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에 의문. ①헌법재판소법은 공탁금 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공탁을 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현행 규정만으로 남소 건의 청구인에게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 개정이 필요, ②남소사건의 수와 예상되는 공탁금 납부명령의 횟수와 금액, 실제 납부될 공탁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③ 남소사건 청구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탁금 납부명령을 내리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고 남소 방지의 효과는 미미해질 가능성이 높음

니하는 범위에서 공탁금 제도의 내실화 등을 포함한 여러 대응책을
논의한 후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본부운영지원(1032-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본부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소 홍보(공보)활동, 청사관리 등 헌법재판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39억 2,600만원 중 35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본부운영지원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본부운영지원	3,926	3,926	—	3,926	3,587	—	339	4,624
홍보(공보)활동	299	299	—	299	291	—	8	464
정책연구용역 등	50	50	—	50	45	—	5	50
차량 임차	126	126	—	126	126	—	—	126
노후사무집기류 교체 등	69	69	—	69	66	—	3	53
청사보안장비 등 확충	81	81	—	81	82	—	△1	43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45	45	—	45	41	—	4	45
사회복무요원 운용	74	74	—	74	71	—	3	87
사이버어학교육 등	46	46	—	46	43	—	3	46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1,503	1,503	—	1,503	1,380	—	123	1,548
청사관리	264	264	—	264	243	—	21	270
시설 보완공사	695	695	—	695	621	—	74	1,393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공사	516	516	—	516	420	—	96	—
출입통제시스템 증설공사	95	95	—	95	95	—	—	—
헌법재판소 전시관 운영	27	27	—	27	27	—	—	34
헌법재판소 도서관 운영 및 관리	35	35	—	35	35	—	—	35
공관 환경개선공사	—	—	—	—	—	—	—	430

자료: 헌법재판소

나. 위원회를 통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도입 필요

- 헌법재판소는 2023년 4,500만 원을 집행하여 1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정책연구용역명	예산액	결산액	수행기간	계약 방식
2019	지적재산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방법-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중심으로-	32	30	'19.6~10.	수의
	헌법소송의 특수성과 다른 소송법령 준용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검토	29	30	'19.8~10.	
2020	AACC 및 연구사무국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25	25	'20.4~10.	
	비교법적 접근을 통한 장애 개념의 헌법적 이해	25	25	'20.6~10.	
2021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방안	20	18	'21.6~10.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와 헌법재판-부양, 양육, 상속 등을 중심으로-	25	23	'21.6~10.	
2022	신속한 기본권 구제를 위한 심판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	45	41	'22.7~10.	제한 경쟁
2023	헌법재판과 사실인정-헌법재판소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50	45	'23.6~10.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무처 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위

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⁴⁰⁾하고 있음.

□ 동 내규 제5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연구목적 달성 여부 및 연구의 충실도 등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하지만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만 개최하였을 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 동 내규 제12조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연구자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 향후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⁴¹⁾하고 있는 만큼, 연구결과의 평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40)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4조(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과제담당관 및 평가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과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1)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12조(연구결과의 평가) ②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및 안건 >

연도	개최 일자	안건
2021	4. 13.	2021년도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2022	3. 31.	2022년도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2023	3. 22.	2023년도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자료: 헌법재판소

□ 다음으로, 동 내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나, 활용상황 점검 시기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반면, 정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⁴²⁾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도 유사한 규정을 두어 그 활용결과를 점검하고 있음⁴³⁾.

4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3)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1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과제검토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향후 연구과제 선정 시에 반영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연구과제명			
부서/과제검토관			
연구단체	책임연구원		
연구기간	~ (개월)	연구비	
연구목적			
활용구분	☐ 법령 제·개정 ☐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 제도 및 정책 개선 ☐ 기타()		
연구목적			
연구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결과			

- 정책연구용역의 활용상황을 점검할 경우 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활용도를 고려하게 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활용상황 점검 규정을 보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는 공사비 낙찰차액 사용 문제

- 헌법재판소는 2023년 동 사업의 공사비(420-03)를 통해 총 6건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11억 156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 헌법재판소 공사비 집행내역 >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기간	예산 편성액	공고금액	낙찰금액	낙찰차액	집행액
시설 보안 강화 및 수목식재공사		2023. 3. 13.~4. 6.	48,000	48,000	41,962	6,038	41,962
전력감시시스템 교체공사		2023.4.3.~4.22.	21,900	21,888	20,355	1,533	20,355
출입통제시스템 교체공사 (조달구매)		2023.4.17.~6.20.	95,510	—	—	—	95,359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공사	건축 공사	2023. 5.10.~12.5.	500,000*	439,080	388,338	50,742	370,107
	전기 공사	2023. 5.5.~11.30.		21,890	20,155	1,735	19,240
	자재 구매 등	2023.4.21.~11.5.		—	—	—	25,000
	소 계						414,347
보일러 교체공사	기계 공사	2023. 7.13.~11.14.	594,500*	283,159	226,085	57,074	212,320
	전기 공사	2023. 9.8.~10.20.		—	—	—	5,225
	자재 구매 등	2023. 6.7.~11.9.		—	—	—	303,293
	소 계						520,838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2023. 8.	—	—	—	—	8,700
합 계							1,101,561

*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공사와 보일러 교체공사는 공종별 금액 분리 없이 총공사금액으로 예산 편성되었고, 동 공사에서의 낙찰금액과 집행액 간 차이는 법정경비(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준공정산으로 발생함.

자료: 헌법재판소

- 이 중 시설 보안강화 및 수목식재공사, 전력감시시스템 교체공사, 출입통제시스템 교체공사,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공사, 보일러 교체공사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되어 있던 공사이고,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계획에 없던 공사임.

□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지침은 공사비 낙찰차액 사용 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⁴⁴⁾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사전협의 없이 낙찰차액을 통해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예산을 집행하였음.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낙찰차액이 아니라 보일러 교체공사의 예산편성액과 공고금액 간 차이인 “예산잔액”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 설명하면서 해당 공사의 실

44) 예산집행지침 중 건설비 낙찰차액 처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마. 낙찰차액 처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 낙찰차액 처리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불용처리한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없이 낙찰차액을 임의 집행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11조(지침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112조(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의 사업수행기관 및 당해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등에 불이익 부과 또는 당해 사업의 예산배정 조정 또는 유보

2.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사업 수행기관의 관계자 포함)

자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3. 1.)

시설계 결과 당초 예산 편성액 대비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가 더 적어 예상되는 공사비 불용액을 활용하여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함.

- 그러나 ①예산집행지침 상 예산잔액이라는 개념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사비에서 잔액(불용)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 물량 증대 등으로 공사비 집행이 증가할 수 있어 공사비 집행이 완료되기 이전에 이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②집행잔액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비가 정산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비⁴⁵⁾이므로 이를 집행잔액을 통해 실시한 공사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⁴⁶⁾⁴⁷⁾ 등을 고려할 때, 동 공사는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45) 예산집행지침이 보조금과 관련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잔액은 사업 완료 및 정산 후 발생하는 경비임을 알 수 있음.

(10)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자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3. 1.)

46)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진행된 2023년 8월 이전에는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공사와 보일러 교체공사는 완료되지 아니하여 해당 공사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없음.

47) 재판관 냉난방기 설치공사에서 사용된 예산 중 동 공사 이전에 완료된 “출입통제시스템 교체공사”의 경우에만 집행잔액을 사용[15만 1,000원 : 95,510천원(예산편성액)-95,359천원(집행액)]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낙찰차액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아야 함.

7.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1033-3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 관련 학술 세미나·헌법재판 경연대회·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정보자료실 운영,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연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18억 6,700만원 중 18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67	1,867	—	1,867	1,837	—	30	1,878
헌법재판연구활동	137	137	—	137	125	—	12	137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16	16	—	16	12	—	4	16
헌법재판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72	72	—	72	60	—	12	72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43	43	—	43	44	—	△1	43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	1,488	1,488	—	1,488	1,488	—	—	1,488
정보자료실 운영	65	65	—	65	65	—	—	55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연수	21	21	—	21	19	—	2	21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19	19	—	19	19	—	—	19
헌법재판제도 방문강의	1	1	—	1	—	—	1	—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보안	5	5	—	5	4	—	1	5
사이버 강좌 재개발	—	—	—	—	—	—	—	22

자료: 헌법재판소

나. 특정 업체와의 발간물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헌법재판연구원은 동 사업과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사업에서 총 18건의 발간물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일반수용비 총 1억 1,43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발간물 계약과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2023년도 헌법재판연구원 발간물 수의계약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집행일자	발간물명	결산액	계약업체	계약방식
1	헌법재판 연구원 기본경비	2023-12-19	2023년도 교육용 법령집	1,210	○○○○○	수의
2		2023-05-08	2022년도 연차보고서	3,960	○○○○○	
3		2023-12-12	2023년도 헌법재판연구원 홍보책자	6,000	△△△△	
4		2023-01-20 2023-08-22	2023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8,786	○○○○○	
5		2023-10-23	2023년도 군법무관 직무연수	2,138	○○○○○	
6		2023-03-02	2023년도 헌법연구관 직무연수	3,707	○○○○○	
7		2023-06-28	2023년도 국선대리인 초청 연수	2,086	○○○○○	
8		2023-03-16	2023년도 헌법재판소 신임 일반직공무원 직무연수	2,009	○○○○○	
9		2023-07-26 2023-12-19 2023-12-21	2023년도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 실무교육	5,259	○○○○○	
10		2023-09-07 2023-12-21	2023년도 대학생 헌법교육 기초과정	3,602	○○○○○	
11		2023-04-03 2023-05-08 2023-06-22 2023-10-27 2023-12-19	2023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헌법교육	13,324	○○○○○	

단위 : 천원

연 번	세부사업	집행일자	발간물명	결산액	계약업체	계약 방식
12	헌법재판 연구원 운영지원	2023-02-03 2023-02-10 2023-03-28 2023-06-05 2023-07-27 2023-09-21 2023-11-22	2023년도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등(8종)	11,060	○○○○○	
13		2023-03-28	2022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발간용역 헌법재판연구원	16,685	○○○○○	
14		2023-10-17	2023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발간용역	14,990	▲▲▲▲▲ ▲▲▲▲▲	
15		2023-08-22 2023-12-21	2023년도 헌법재판 전문학술지(헌법재판연 구 제10권 1,2호)	10,900	◇◇◇◇◇	
16		2023-06-05 2023-12-21	2023년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3종)	2,281	▽▽▽	
17		2023-09-22	2023년도 제12회 국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518	○○○○○	
18		2023-12-19	2023년도 제7회 우수헌법수업 경연대회 자료집	4,840	○○○○○	
합계				114,355		

자료: 헌법재판소

□ 첫째, 헌법재판연구원은 2023년도에 체결한 총 18건의 수의계약 중 14건(77.8%)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와 체결하였음.

- 발간물 계약은 모두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요건⁴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과다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헌법재판연구원은 총액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연구보고서 발간용
역을 두 차례 계약으로 나뉘어 수의계약을 진행한 문제가 있음(위 표
연번 13·14).

- 헌법재판연구원은 매년 연구보고서 작성 계획을 수립하고 두 차례
에 나누어 이를 발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상반기에는 전년도에
작성이 완료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하반기에는 발간 당시까지
작성이 완료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라.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다. (생략)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
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 차. (생략)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 마.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
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생략)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 6) (생략)
나. ~ 아. (생략)

<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주제 선정 및 발간 방식 >

□ 연구보고서 주제 선정 방식

- 연구보고서 주제는 각 팀장이 재판부 및 연구부의 연구과제 제안 등 내·외부 의견 수렴을 통하여 다음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제안회의(연구교수부장, 각팀장, 헌법연구위원, 외부교수 참석)에 이를 회부하여 과제제안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연구과제를 선정함
- 주제선정 및 발간계획은 연초에 연구기본계획·연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

□ 연구보고서 발간 주기

- 연구보고서는 연구기본계획에 의해 1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약 6개월의 연구를 실시한 후 1년에 두 차례 책자로 발간하고 있음

자료: 헌법재판소

- 이와 같이 연초에 연구보고서 작성 계획을 수립하여 연례적으로 연구보고서를 두 차례 발간하고 있으므로 연구보고서 발간 계약은 연초에 총액으로 체결할 수 있음.
- 그러나 헌법재판연구원은 이러한 발간 계약을 분할하여 각 계약 금액이 2,000만원 미만⁴⁹⁾이 되도록 함으로써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함. 즉, 헌법재판연구원은 계약 총액 규모상 경쟁입찰 대상이 될 수 있을 연구보고서 발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두 차례로 분할한 것으로 보임.

49) 수의계약 요건에 관하여는 각주 48) 참고

- 이와 같은 발간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분할 수의계약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⁵⁰⁾.

□ 따라서 헌법재판연구원은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체결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해야 할 발간 계약을 분할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참여 및 수상작 활용도 제고 필요

-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헌법교육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여 교사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초·중·고 교사가 참여할 수 있음.

<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요 >

- **(대회 운영)** 매년 상반기 교사들의 강의계획서를 접수하여, 예선(서면심사)과 본선(강의시연)을 종합 평가하여 총 8명 시상
- **(참가 대상)** 전국 초·중·고교 교사 *21년부터 초등학교원까지 참가대상 확대
- **(활 용)** 수상자의 강의계획서는 자료집으로 제작되어 교원연수 시 교사들에게 직접 공유되며,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전국의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연구원은 2023년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심사수당 등 일반수용비 723만원, 포상금 1,200만원 등 총 1,923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도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예산집행 내역 >

비 목	집행액	비 고
일반수용비 (210-01)	723만원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 심사수당, 행사물품 · 웹포스터 · 자료집 제작
포상금 (310-03)	1,200만원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상금
합 계	1,923만원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 재구성

□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교사들의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동 경연대회에 2021년에는 17인, 2022년에는 25인, 2023년에는 16인의 교사가 참가하여 그 수가 높지 않은 상황임.

<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및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비교 >

구 분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참가(개인)	입상(개인)	참가(팀)	입상(팀)
2021년	17	8	52	8
2022년	25	8	58	8
2023년	16	8	55	8
비 고	- 대상(300만원) 1명 - 금상(200만원) 1명 - 은상(150만원) 2명 - 동상(100만원) 4명		- 헌법재판소장상 1개 팀 (상금: 500만원) - 금상 1개 팀 (상금: 400만원) - 은상 2개 팀 (상금: 300만원×2팀=600만원) - 동상 4개 팀 (상금: 200만원×4팀=800만원) - 우수변론상(개인상) 1명 (상금: 100만원)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 재구성

- 헌법재판연구원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의 경우 참여팀 수가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의 약 3배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입상팀 수는 동일하여 상대적으로 우수 헌법 경연대회가 입상 경쟁률이 낮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목적이 우수한 헌법교육 강의계획서를 발굴하는 것인 만큼,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우수한 강의계획서를 확보할 필요

가 있다고 보임.

- 둘째, 헌법수업 경연대회 수상작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연구원에 따르면 수상자의 강의계획서는 자료집으로 제작되어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원연수 시 교사들에게 제공되고,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
 - 그러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원연수의 참여 교사는 매년 제한되어 있고⁵¹⁾, 홈페이지 게시의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교사는 이를 활용하기 어려움.
 - 수상자 강의계획서를 매년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발송하여 일선 학교까지 전달하게 된다면 헌법 관련 교육을 강의하는 교사들이 이를 직접 인지할 수 있어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고, 나아가 교사들이 이러한 경연대회를 알게 되어 경연대회에 대한 참여 의욕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의 교사 참여 및 경연대회 수상작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동 경연대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51) 헌법재판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87명, 2022년 145명, 2023년 96명이 교원 연수를 받았음.

8. 국제교류(1034-3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제교류 사업은 베니스위원회, 세계헌법재판회의,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정례회의 등을 참석하고,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세미나 개최, AACC 연구사무국 운영, AACC 연구 컨퍼런스 개최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5억 7,300만원 중 5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국제교류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교류	573	573	15 △15	573	501	—	72	587
베니스위원회 참석	74	74	—	74	70	—	4	74
세계헌법 재판회의 등 참석	26	26	—	26	3	—	23	30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등 참석	55	55	—	55	56	—	△1	55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세미나 개최	42	42	1 △1	42	20	—	22	42
AACC 정례회의 등 참석	42	42	—	42	24	—	18	42
AACC 연구사무국 운영	111	111	14 △4	121	122	—	△1	121
AACC 연구 컨퍼런스	185	185	—	185	182	—	3	185
AACC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37	37	△10	27	24	—	3	37

자료: 헌법재판소

나. 국외업무여비 집행 부진

- 2023년 동 세부사업 내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세미나 개최”, “AACC 정례회의 등 참석” 등 내역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집행이 부진하였음.

< 2023년도 국제교류 내역사업 중 국외업무여비 집행 부진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100)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국외업무여비 (220-02)	18	—	0%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세미나 개최		19	7	36.8%
AACC 정례회의 등 참석		26	952)	34.6%
합계		63	16	25.4%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 재구성

-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사업은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헌법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사업으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당시 세계선거 재판회의 의장기관인 인도네시아 선거감독위원회 및 기술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멕시코 연방선거재판소에서 2023년 7월 총회 미개최 결정을 통보하여 동 내역사업의 국외업무여비가 집행되지 못하였음.
-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세미나 개최” 사업은 각국 헌법재판기관 및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 저명 헌법학자 등을 초청하여 강연회·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캐나다 연방대법

52) 국외업무여비 집행액 900만원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주최 쇼트코스 참석에 따라 집행

원장을 초청하여 강연회 등을 진행하였는데, 캐나다측에서 왕복 항공임을 자비 부담하고 헌법재판소측은 숙박비만 부담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의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함.

- “AACC 정례회의 등 참석” 사업은 AACC 총회, 이사회 등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사업으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당초 몽골에서 개최되는 AACC 정례이사회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2023년 4월 몽골 헌법재판소가 정례이사회를 2023년 6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동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국외업무여비의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함.

□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국외업무여비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안 편성 시 국제회의 개최 여부 및 방식(대면·화상) 등을 파악하여 사전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초청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라 항공임 및 체재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예산안 편성 시 초청국가를 정해 그에 따라 항공임 및 체재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예산안 편성 시 국제회의와 초청사업에 수반되는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면밀히 산정·반영하여 국외업무여비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9. 재판자료확충(1035-30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재판자료확충 사업은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등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각종 자료 및 공보 등을 제작·발간하고 헌법재판소 내 도서관 자료를 확충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4억 2,000만원 중 4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재판자료확충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재판자료확충	420	—	420	402	—	18	470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7	—	7	8	—	△1	7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발간	14	—	14	11	—	3	14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발간	9	—	9	6	—	3	9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37	—	37	38	—	△1	37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32	—	32	36	—	△4	32
헌법논총 발간	27	—	27	17	—	10	27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50	—	50	42	—	8	50
도서관자료 구입	216	—	216	216	—	—	266
헌법재판실무제요 발간	28	—	28	28	—	—	—
헌법재판소장연설문집 발간	—	—	—	—	—	—	13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오디오북 제공	—	—	—	—	—	—	15

자료: 헌법재판소

나. 연례적 발간물의 발간 수량 재검토 필요

- 헌법재판소는 재판자료확충 세부사업⁵³⁾을 통해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공보, 헌법논총 6종⁵⁴⁾을 매년 발간해오고 있음.

< 최근 4년 연례적 발간물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발간물명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2020	10	9	1	10
	2021	7	7	0	0
	2022	7	7	0	0
	2023	7	8	△1	△19.4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2020	18	12	6	33.3
	2021	17	8	9	51.2
	2022	15	8	7	42.8
	2023	14	11	3	23.7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20	9	8	1	11.1
	2021	9	5	4	45.4
	2022	9	5	4	41.0
	2023	9	6	3	34.8
헌법재판소판례집	2020	60	40	20	33.3
	2021	45	26	19	42.4
	2022	40	31	9	23.7
	2023	37	38	△1	△2.8
헌법재판소공보	2020	46	28	18	39.1
	2021	40	34	6	16.1
	2022	36	29	7	19.8
	2023	32	36	△4	△13.4
헌법논총	2020	33	18	15	45.5
	2021	31	16	15	49.2
	2022	30	20	10	32.1
	2023	27	17	10	35.4

자료: 헌법재판소

53) 세부사업 중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은 외국판례나 학술자료 등을 번역·발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부 발간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번역료가 주된 예산이고, ‘헌법재판실무제요 발간’은 2015년 12월 발간 이후 제3개정판을 발간하는 것으로 연례적 발간물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음.

54) ①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을 번역하여 해외에 널리 알리고 외국 유관기관 등과의 상호협력·교환자료로 활용, ②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판례를 법조문벌·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국민들이 접근성을 높이고, 기초적인 연구자료로 활용, ③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매년 선고되는 헌법재판소 결정 중 주요 결정을 선정하여 해설서를 발간·배포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용, ④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 중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발간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 ⑤헌법재판소공보: 헌법재판소 규칙, 인사, 공지사항, 판례 등의 내용으로 매월 간행됨, ⑥헌법논총: 헌법·헌법재판 관련 논문의 공모 및 논문집 발간을 통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를 헌법재판에 활용

- 그동안 해당 발간물들은 결산 심사를 통해 연례적 집행부진 등에 대하여 국회의 지적을 받아 왔고, 헌법재판소는 후속 조치로 해당 예산을 감액하거나 일부 발간물 수량을 조정해 왔음.

< 최근 4년 연례적 발간물 발행부수 >

(단위: 수량)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상 발행부수	실 발행부수	예산상 발행부수	실 발행부수	예산상 발행부수	실 발행부수	예산상 발행부수	실 발행부수
영문헌법재판소 판례집	900	900	900	900	900	800	800	800
헌법재판소판례 요지집	6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헌법재판소결정 해설집	6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헌법재판소 판례집	800x2회	550x2회	550x2회	550x2회	550x2회	550x2회	500x2회	500x2회
헌법재판소 공보	750x12회	500x12회	500x12회	500x12회	500x12회	500x12회	500x12회	500x12회
헌법논총	600	550	550	550	550	550	500	500

자료: 헌법재판소

- 해당 발간물들은 누구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열람·활용이 가능한바, 적정 배부수량의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발간수량의 조정이 필요해 보임.
- 첫째, 해당 발간물들은 총 발행수량의 10% 이상을 재고로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보임. 이에 이전 재고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재고 수량의 재조정이 필요함.
 - 둘째, 국가기관 등에 배부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그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헌법재판소판례집의 경우

그 페이지 수가 1088쪽에 달해 책자 형태로 업무에 활용하기보다는 PDF파일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셋째, 전직 주요인사, 재판소 소관 위원회 외부 위원 등에게 배부하는 수량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전직 주요인사 등에 발간물을 일률적으로 배부하기보다는 해당 배부 인사 또는 위원의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배부수량을 결정해야 함.

< 2023년도 연례적 발간물 배부처 >

(단위: 수량)

배부처	영문 판례집	판례 요지집	결정 해설집	판례집	공보 (1화x12월)	논총
헌법재판소 (재고)	139 (120)	92 (88)	131 (55)	137 (60)	132 (62)	133 (53)
대학 도서관	30	89	107	99	99	106
국회	30	3	5	31	30	30
법원·검찰	2	16	37	37	34	24
정부기관	3	44	69	52	59	60
법조계	1	15	25	20	19	20
언론사	-	3	4	4	4	4
전직 주요인사, 재판소 소관 위원회 외부 위원 등	12	-	67	61	61	70
국외기관 (대사관 포함)	463	-	-	-	-	-
총 발행수	800	350	500	500	500	500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의 연례적 간행물은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는 방식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부수량의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해 책자 발간을 지양하고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판결 등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법률정보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10.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1035-5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은 헌법재판 업무의 정보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노후화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 장비 교체·확충과 사이버 보안 활동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82억 4,200만원 중 81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7,900만 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헌법재판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헌법재판정보화	8,242	8,242	26 △26	8,242	8,163	－	79	6,443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보호	836	836	－	836	834	－	2	896
정보시스템 확충	3,831	3,831	－	3,831	3,785	－	46	1,670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1,767	1,767	△26	1,741	1,706	－	35	2,004
기구축정보시스템 임차	1,590	1,590	26	1,616	1,623	－	△7	1,637
일반운영 등	217	217	－	217	214	－	3	236

자료: 헌법재판소

나. AACC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 시 사전 계획 미흡

-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일반연구비 2,750만원을 집행하여 AACC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음.

< AACC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 관련 계약 현황 >

계약명	비 목	금 액	계약기간
AACC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	일반연구비 (260-01)	2,750만원	2023. 8. ~11.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 재구성

-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3년 11월에 동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동 홈페이지 구축·운영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아니하여 8개월이 지난 2024년 7월에서야 그 운영을 개시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임을 고려하여 일단 공식 운영을 보류하였고, AACC 연구사무국의 주된 목적이 회원국 간 학술교류라는 점에서 AACC 및 정부 유관기관 홈페이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경 발발한 전쟁으로 홈페이지 구축 이전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구축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
 - 또한, AACC 회원국⁵⁵⁾에는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카

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연구사무국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 후 즉시 운영할 수도 있었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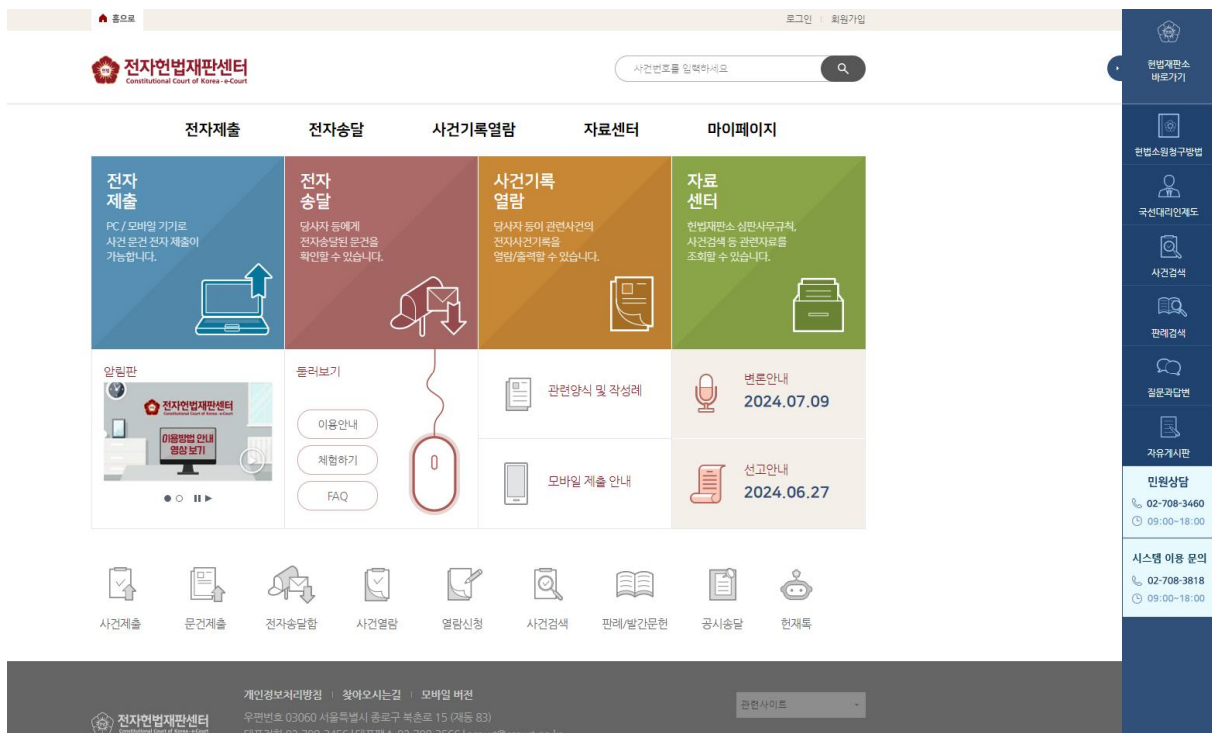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시 사전에 구축·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55)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총 21개국)

다.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 활성화 필요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장(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및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자헌법재판센터를 구축하고 2010년 3월부터 헌법재판의 전자접수와 재판문서의 전자송달, 인터넷 기록열람 등의 전자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자헌법재판센터 홈페이지 >



-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은 직접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여 국민의 헌법재판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헌법 재판소로서도 해당 업무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운영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최근 5년 헌법재판 전자접수·전자송달 비율 >

(단위: 건, %)

접수	연 도	전체접수	전자접수	전자접수 비율
	2019	2,730	1,286	47.1
	2020	3,241	1,661	51.2
	2021	2,827	1,332	47.1
	2022	2,829	1,457	51.5
	2023	2,591	1,328	51.3
송달	연 도	전체송달	전자송달	전자송달 비율
	2019	9,176	3,324	36.2
	2020	11,572	4,610	39.8
	2021	10,485	4,577	43.6
	2022	10,583	4,367	41.2
	2023	12,638	4,965	39.2

자료: 헌법재판소

- 또한, 전자송달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절약이 가능한 예산인 송달료도 매년 집행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그 활성화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임.

< 최근 5년 송달료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19년	37,897	37,897	29,228	77.1
2020년	33,577	33,577	35,427	105.5
2021년	33,577	33,577	34,118	101.6
2022년	33,577	33,577	35,299	105.1
2023년	33,577	33,577	42,288	125.9

주) 송달료는 '본부기본경비(1011-250)'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로 편성되었음

자료: 헌법재판소

- 법원의 경우 소송에 있어서의 전자접수율·전자송달율이 2023년도 각각 92.5%·32.2%를 차지하고 있음. 법원의 소송(소송비용 개인이 부담, 전자접수 시 인지액 일정부분 할인)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송비용 국가가 부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더라도 전자적 처리에 따른 편리함 자체는 동일하므로 50%대인 헌법재판소의 전자접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최근 5년 법원 소송사건 전자접수율·전자송달율⁵⁶⁾ >

(단위: %)

연도	전자접수율	전자송달율
2019	70.6	25.4
2020	79.5	28.0
2021	87.3	29.8
2022	90.8	31.4
2023	92.5	32.2

자료: 법원행정처의 자료를 재구성

- 위헌법률심판(헌가), 권한쟁의심판(헌라)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청구되어진다는 점에서 전자접수율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특히, 법원만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⁵⁷⁾은 법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전자접수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56) 법원 전자소송 도입: 특허(2010. 4.), 민사(2011. 5.), 가사·행정(2013. 1.), 보전처분(2013. 9.), 회생·파산(2014. 4.), 시·군법원(2015. 1.), 민사집행·비송(2015. 3.)

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 최근 5년 심판사건 유형⁵⁸⁾별 서면접수/전자접수 건수 및 비율 >

(단위: 건, %)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 허가사건					
- 서면 접수	31	20	38	43	25
- 전자 접수	-	-	-	-	-
- 전자접수율	0%	0%	0%	0%	0%
○ 헌나사건					
- 서면 접수	-	-	1	-	4
- 전자 접수	-	-	-	-	-
- 전자접수율	-	-	0%	-	0%
○ 헌다사건					
- 서면 접수	-	-	-	-	-
- 전자 접수	-	-	-	-	-
- 전자접수율	-	-	-	-	-
○ 헌라사건					
- 서면 접수	4	3	-	1	-
- 전자 접수	2	2	2	4	10
- 전자접수율	33.3%	40%	100%	80%	100%
○ 헌마사건					
- 서면 접수	1,183	1,262	1,220	1,161	1,030
- 전자 접수	879	1,210	981	1,161	905
- 전자접수율	42.6%	48.9%	44.6%	50%	46.8%
○ 헌바사건					
- 서면 접수	226	295	236	167	204
- 전자 접수	405	449	349	292	413
- 전자접수율	64.2%	60.3%	59.7%	63.6%	66.9%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대리인 선임이 필수⁵⁹⁾적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국선대리인예정자⁶⁰⁾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자접수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챗봇시스템인

58) 허가: 위헌법률심판, 헌나: 탄핵심판, 헌다: 정당해산심판, 헌라: 권한쟁의심판, 헌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9)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 헌법재판소는 2024년 현재 80명의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를 운영하고 있음.

‘헌재톡61)’을 활용하여 전자접수·전자송달의 활용방법 및 그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

<2023년도 ‘헌재톡’ 이용 현황>

(단위: 명, 건)

구분(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이용자 수		215	181	259	243	301	149	301	226	250	176	186	108	2,595
대화건수	전체	602	606	671	860	983	911	1,063	563	541	490	486	360	8,136
	이용시간 평일 근무시간 (9시~18시)	363 (60%)	441 (73%)	384 (57%)	573 (67%)	637 (65%)	681 (75%)	753 (71%)	394 (70%)	321 (59%)	283 (58%)	315 (65%)	205 (60%)	5,350 (66%)
	평일 근무시간 외 공휴일	239 (40%)	165 (27%)	287 (43%)	287 (33%)	346 (35%)	230 (25%)	310 (29%)	169 (30%)	220 (41%)	207 (42%)	171 (35%)	155 (40%)	2,786 (34%)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재판 접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시스템의 활용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시스템 편의성 개선을 통해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의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1)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제도 및 각종 민원사항 등에 대해 문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함.

참 고 자 료

1. 최근 3년 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 2022년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인건비 예산의 불용률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고, 2022년에는 불용률이 낮아졌으나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인건비 집행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주의	○ 2023년도 인건비 집행률을 면밀히 관리하여 2022년에 이어 불용률이 감소하였음(2022년 4.6% → 2023년 2.7%) ○ 향후에도 면밀한 소요 예측과 검토를 통한 인건비 예산 편성으로 인건비 불용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사건 접수 건수 증가 등에 대응해서 헌법심판사건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임 - 2022년 헌법재판의 처리를 담당하는 인원은 총 67명(법원, 검찰청 파견 인원 13명 포함)이 4,347건을 처리 - 헌법연구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건수는 2022년 38.8건으로 2018년 40.8건과 비교해서 줄었고,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732.6일로 2018년 569.1일과 비교해서 증가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등의 증가로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동 업무의 수행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제도개선	○ (사실관계 확인 업무 관련) 신속한 심판사건처리를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수적인 바, 헌법연구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합적인 수행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18. 6월 개정) 및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21. 12월 제정)를 제·개정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헌법연구관 정원 적정 수준 관련) 충실하고 신속한 심판사건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부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기재부와 의 헌법연구관 증원 협의를 통해 총 3명을 증원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연구관 정원의 적정 수준에 대해 검토 할 것		- 향후에도 기재부와 협의 및 검토 를 통해 적정 수준의 헌법연구관 정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2022년 헌법연구관 정원은 69명이나 현원은 59명으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2018년 이후 헌법연구관 정원은 확대되었으나 헌법연구관의 현원은 정원 대비 7~10명이 미달함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명이 신규임용된 반면 퇴직자도 9명에 달하고 있으며, 퇴직자 중에는 헌법연구관의 임기 10년을 충족하지 않고 5년, 6년, 7년 근무 뒤에 퇴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배치된 헌법연구관 등에 헌법재판 사건의 업무 분담 또는 탄력근무제 실시 등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헌법연구관의 조기 퇴직 사유와 근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헌법연구관의 장기재직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충실한 심판사건 연구업무를 위한 헌법연구관의 현원 확보 및 결원과 연평균 휴직신청 인원 등을 고려하여, 2023년에 헌법연구관 채용시험을 거쳐 총 10명의 합격자를 선정하였고, 2024년에 순차적으로 헌법연구관(보)으로 임용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헌법연구관의 장기근속 방안 등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헌법연구관의 현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예산안 작성 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재까지의 직책수행경비 지급 추이를 살펴볼 때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기 어려운 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밀하게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직책수행경비 부족분이 발생하거나 불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 단계에서 직제 개편 또는 증원에 따른 직책수행경비의 실소요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반영하고, 직책수행경비와 관련된 연계적인 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실소요를 감안하여 직책수행경비 예산을 감액 조정 하였음 * ('23예산)1,274,496천원 → ('24예산)1,269,696천원 ○ 향후에도 직책수행경비 예산 편성 시, 증원 및 휴직 소요 등을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직책수행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제헌절, 헌법재판소 창립일, 법률신문 창간 기념일에 맞춰 연 3회 법률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그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다짐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함 - 지하철캠페인과 유사하게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제도나 전자헌법재판센터와 같은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시설 및 행사를 소개하는 등 법률신문 독자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법률신문 광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23. 8. 31. 지면광고부터 상징적인 광고 문구를 지양하고 전자헌법재판센터, 국선대리인 제도 등 수요자 친화적인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2022년 헌법재판소 정원은 343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를 때, 13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나 현행 산정방식에 따를 때 11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상황으로, 기준에 2명이 미달하여 의무고용을 미달성한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	제도개선	○ '23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인 공무원을 신규 채용('23. 8. 29.)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비율을 달성하였음(13명, 3.6%)
○ [지적사항] 2022년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임차차량은 한시기구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차량임차시 구매와의 비용차이를 최소화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권익위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장 관용차를 수의계약으로 임차함 ○ 헌법재판소가 승용의 대형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최단운행연한인 8년에 미달하므로 공용차량관리 규정에 반할 소지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임대차량에 대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임대기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	제도개선	○ 해당 계약은 추정가격이 1억 이상으로 조달청에 의뢰하여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나, 두 차례 이상 유찰된 것으로 재공고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라 동법 제16조의2, 「조달청고시」내용연수의 최단운행연한(8년)은 구매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임차차량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헌법재판소는 임차차량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의 기관특성, 예산상황, 용도, 유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임차 계약기간을 최대범위(5년)로 설정하는 등 임차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비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향후 임대차 계약 진행 시, 국가계약법 등 입찰·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규모에 따라 공정한 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동일인이 다수청구, 반복청구한 사례가 전체 헌법재판 청구 사건의 약 1/3 (31.1%, 23,939건 중 7,456건)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는 신속한 재판을 어렵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원활한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동일인의 다수청구, 반복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전자접수를 통한 무분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2년 9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이나 권리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였음 ○ 아울러, 남소 방지 및 신속한 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 여러 차례 관련 연구용역 및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추후에도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필요 시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겠음
○ [지적사항] 최근 10년(2013년~2022년) 동안 헌법재판의 접수 건수는 2013년 1,480건에서 2022년 2,829건으로 1,349건이 증가함 - 이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헌마 사건)은 2013년 982건에서 2022년 2,322건으로 1,340건으로 증가했고, 헌마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은 2013년 748건에서 2022	제도개선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민원상담 과정에서 청구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청구요건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양한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음 - 다만, 사건서류의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청구요건 충족 여부를 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년 1,915건으로 1,167건 증가함(2023년 6월말 기준) ○ 헌법소원심판의 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향후 사전에 소송 요건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민원실 상담 안내, 지능형 민원상담(챗봇)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할 것		전에 판단하여 안내하는 것은 심판 청구 접수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음 ○ 향후 청구인이 청구요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작·배부하고 민원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직원의 직급과 과정에 따라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해당 과정을 미수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지원한 수업료를 수강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2022년 전화외국어 수강인원 158명 중 국장급 이상 직원 2명, 3~5급 직원 중 9명이 해당 과정을 수료하지 못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전화외국어 과정을 미수료한 직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원한 금액의 일부 내지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책임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제도개선	○ 2024년도 1분기 전화외국어 과정부터 미수료한 직원에 대해 지원한 수업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을 어학과정 운영계획에 반영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가 있고, 해당 연구에 지출된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그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AACC 및 연구사무국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2021년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방안’ 그리고 2022년 ‘신속한 기본권 구제를 위한 심판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가 실시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연구결과를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개선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이행여부 및 진척도 등을 점검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실시 후 해당 부서에 용역 결과물을 전달하여 활용하고 있음 ○ 향후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물이 산출되면 관련 부서로부터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용역 결과 활용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또한, 필요한 법 개정이나 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의 처리 기간이 2년을 경과한 사건이 2018년 191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의 법률상 주요 기능은 헌법재판 연구이고, 조직에는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등이 있으므로, 처리기간이 2년을 경과한 사건 해결을 위한 헌법재판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할	제도개선	○ 헌법재판연구원은 신속한 사건처리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과제의 헌법재판 관련성 제고와 연구원의 기능 및 인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연구과제의 헌법재판 관련성 제고) 연구업무 내규를 변경하여 연구과제 선정 시에 헌법재판 실무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선정 전 재판부와 연구부로부터 연구과제 제안 목록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법정 상한인 40명에 미달하는 38명이고 현원이 33명이고,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예산 가운데 헌법재판연구활동 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 운영지원 예산 18억 5,800만원 중 비중이 적은 측면이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이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기능과 인력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확대되어야 할 성과·사례를 국회 등에 설명하는 노력 필요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사건의 처리 등에 헌법재판연구원 인력의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접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 (연구보고서, 세계헌법재판 조사보고서 국회 배부) 매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과제 발간보고서를 국회 관련 부서(의장실, 법사위위원실, 위원회, 국회도서관 등)에 송부하여 연구과제 성과를 공유하고 있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LLM 과정이 아닌 헌법연구관에게 지급 기준액 보다 5,68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라 매달 5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였기 때문임 - 당시 헌법재판소는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학자금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를 전용하여 체재비를 지급하였는데, 체재비 추가 지급액은 규정에 따른 것이나 전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상	시정	○ 2025년도 해외연수 사업 예산 편성 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등 집행 소요 자료를 근거로 체재비 추가 지급액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황에서 추가지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 등 추가 지급액 소요를 입증할 자료를 근거로 추가 지급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 [지적사항] 재판자료확충의 내역사업 중 영문헌법재판소 판례집, 헌법재판소 판례집,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 공보 등 발간 사업의 2022년 예산 1억 3,900만원 중 1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집행률 73.3%), 발간비 예산 1억 1,100만원 중 8,400만원(집행률 75.7%)이 집행됨 ○ 헌법재판소는 책자 발간 외에도 홈페이지에 발간물과 동일한 내용의 PDF 파일을 게재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발간물 자료를 배포중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발간물의 온라인 배부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희망하는 기관에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배부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소요에 맞게 헌법재판소 책자 발간 예산을 조정할 것	제도개선	○ 현재 판례집, 공보, 영문판례집, 판례요지집, 결정해설집 등 홈페이지에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 중 - '23년도 발간물 외부 홈페이지 게시 완료(12월) ○ 발간수량의 경우, '19년 발간물 배부기관을 대상으로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실소요에 맞게 발간수량을 대폭 감축*(△4,750부, △34%)하였으며, * ('19년) 14,050부 → ('23년) 9,300부 ○ 발간예산 또한, '18년 이후 매년 동예산을 감액조정(△88백만원, △41%)하였음 * ('18년) 214백만원 → ('23년) 126백만원 ○ 앞으로도 수시 수요조사를 통한 발간물 수요를 파악하여 발간수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적정히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는 업무추진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는 부분의 카드사용액에 대해 카드승인건별로 디브레인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2회씩 일괄하여 지급처리하는 방식으로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함 - 업무추진비 개별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증빙의무가 있는 사용건인지, 사용 제한업종 및 시간대에 집행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결산심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급처리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사용의 목적과 용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 사본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업무추진비 예산 지급처리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재 시 요구조건에 맞추어 세부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제도개선	○ '22년도 집행내역의 경우 디브레인 시스템 상 이미 처리가 완료되어 사용내역을 추가로 기재하여 모든 집행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제작하기 힘든 상황인 바, 1분기 분량의 자료를 수작업하여 요청 의원실에 제출하였으며, '22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점검 받은 바 있음 ○ 또한 '23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예산 지급처리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재 시 요구조건에 맞추어 업무추진비 카드승인 내역을 건별로 처리하여 세부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재판자료확충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실제 간행물의 발간분량이 적게 나타남에 따라 각종 발간물의 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	제도개선	○ 불용액 감소를 위해 '18년 이후 매년 발간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18년 214백만원 → '23년 126백만원)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동 사업예산 집행률 또한, '22년 73%에서 '23년 92%로 19% 증가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헌법재판소 발간물 간행 관련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 1억 8,900만원 중 1억 5,100만원만 집행하고 3,800만원을 불용 - 간행물 발간비의 집행부진 문제는 연례적으로 발생해 온 것으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음 - 발간비 및 원고료의 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예산 계상 시 발간물의 권당 면수와 원고료 지급 대상 원고의 종류 및 분량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기 때문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과거 연도 간행물 발간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여 발간 비용의 과다 산정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다만, 발간물의 특성 상 발간예산 편성 시 원고 분량, 배부수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라며, - 향후에도 발간예산의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다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 또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심판사건 처리 기간은 180일 이내이지만, 심판사건 처리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사건 수가 2018년 191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증가함 ○ 2017년에 접수되었으나 2023년 7월말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21건 있음 - 헌법재판소의 과도한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고, 헌법연구관의 인력 확충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에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부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장기미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근무경력이 많은 연구관들로 구성된 장기미제부를 한시적으로 신설('23. 2. 12.) 운영하고 있음 ○ 향후에도 사건처리 지연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정비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등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움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소원 등 심판사건의 처리기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접수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국 결정이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심리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		○ 다만, 헌법재판은 대세효가 있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헌법재판관례 및 입법례 조사, 국내외의 연구자료 수집·분석, 관련기관의 의견 취합 등의 과정이 필요한바, 기본적으로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지적사항] 2022년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비 중 청사 임차료 비중이 81.5%로서 2020년 비중 79.7%보다 상승함 -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원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임차료 177억 7,600만원 지출했으며, 2024년부터 계약만료시점인 2047년까지 24년간 추가로 357억 1,200만원의 예산의 추가 지출 예상됨 ○ 임차료 예산의 과다 지출은 헌법재판연구원 본연의 기능인 연구와 교육에 영향을 주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임차료 절감을 위해 청사 이전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청사 수급 계획 마련과 함께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 헌법재판연구원은 청사 임차료 과다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청사 이전 및 단기적인 임차료 절감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장기대책: 청사 수급계획 마련) 청사 임차료의 절감 및 안정적인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통합청사 입주('29년 예상, 관련계획 국회심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료 과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단기대책: 효율적인 청사공간 활용) 청사 임차료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시설축소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청사이전 전이라도 교육과정 신설(3개 과정 증)하고 대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연구원 교육기능 강화를 통해 임차료 절감효과를 달성할 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구체적인 청사 임차료 절감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사건에서 사선대리인이 대리한 사건의 인용률이 국선대리인이 대리한 사건의 인용률보다 높음 -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은 2018년 국선대리인 10.2%, 사선대리인 29.0%로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이 3배 정도 높았고, 2020년도는 국선대리인 11.2%, 사선대리인 15.2%로 역시 사선대리인이 4%포인트 높았으며, 2022년도에는 국선대리인 9.1%, 사선대리인 17.1%로 사선대리인이 8%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이 사선대리인의 인용률보다 낮은 원인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경우 승소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사건 수임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최근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에 비해 인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2010년 이후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 인용률이 사선대리인 선임사건 인용률보다 높았던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예정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 경력 및 전문분야, 과거 국선대리활동에 대한 평가를 적극 고려하는 등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높은 국선대리인단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앞으로도 국선대리인이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심판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보수 현실화 검토, 초청연수 실시, 모범국선대리인 포상 및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음

■ 2021년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연구관의 비서실장 및 공보관 겸임, 육아휴직에 대한 별도 정원 운영 비활용 등으로 인력부족과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겸임 축소, 육아휴직자에 대한 별도정원 운영 등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인력 확보와 동시에 인건비의 충실한 집행을 도모할 것	주의	○ 인건비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시 실소요를 감안하여 241백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음 * 32,101('23요구)→31,860백만원('23확정) ○ 향후 육아휴직에 따른 별도정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원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업무추진비 집행액 중 95.1%인 6억 9,300만원을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면서 해당 카드사용액에 대해 카드승인건별로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매월 2회씩 세부사업·비목별 총액으로 일괄 지급처리함 ○ 이와 같은 지급처리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고, 건당 50만원 이상인 사용한 경우의 증빙의무, 사용 제한업종, 사용 지역 및 사용시간대 제한 등의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국회의 원활한 결산심사를 저해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의 지급처리에 있어	주의	○ 2023년부터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에 대해 카드승인건별로 사용처 및 사용금액을 기재하여 지급처리하고 있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서 예산집행지침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정부구매카드 승인건별로 사용내역을 기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주의할 것		
○ [지적사항] 재 판부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변론을 열고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재 판부가 직권으로 참고인을 선정한 사례가 적게 나타나는 등 해당 제도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여비, 일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보전금 사업 내역은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평균 13%의 집행률에 그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재 판부 직권으로 참고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참고인 연구비 내역사업 등의 예산 집행률을 개선하고 헌법 재 판의 변론을 활성화할 것	제도개선	○ 2021회계연도 참고인 연구비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2022회계연도에는 총 8회의 변론 중 7회·17명의 참고인에게 연구비로 2,550만원을 집행하였음(141.7%) - 또, 2022회계연도에는 재 판부 직권으로 1명의 참고인을 선정하였음 ○ 향후에도 헌법재판소는 변론 제도와 참고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다만. 사건의 성격, 변론 횟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참고인 연구비의 지출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주시기 바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심판사건처리율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심판사건 처리율 목표치를 2020년 100.0%, 2021년 95.0%, 2022년 94.0%로 매년 하향하고 있고, 성과지표 측정방식에서 과거 미처리 사건을 제외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제도개선	○ 정확한 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과거 미처리 사건에 대한 처리실적을 성과지표에 반영하였음 [성과지표: 심판사건처리율] - 측정산식: 처리사건/접수사건×100 * 접수사건: 본년 접수사건 + 과거연도 미처리 사건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누적 미제사건 수를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등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때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통해 처리한 사건은 연평균 500여건이고 평균 처리기간은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음 ○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지원하는 조사·연구 업무수행에 다수의 헌법연구관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같은 사람이 동일인이 같은 해에 50건 이상을 청구한 남소의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됨 - 남소건은 2012년 326건에서 2020년 1,193건, 2021년 846건으로 증가하였고, 남소건의 대부분(2021년 99.9%)이 형식적 요건 미비로 각하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의 처리지연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남소를 방지하는 대책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22. 9.)하여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록 사용자의 전자헌법재판센터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민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과 방법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통한 상담 안내, 홈페이지·홍보만화·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계속 안내하고 있음 ○ 앞으로도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사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연구관 결원 중 6명은 인사명령 방식의 변경(검임→전보)이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별도정원 운영으로 결원 해소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인사를 통해 지원인력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연구원 내 연구 관련 상위 보직을 전부 헌법연구관으로 임명하는 인력운영 방식이 일반임기제 책임연구관의 높은 퇴사율(개원 후 퇴사율 60.0%)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 내 상위보직에 헌법연구관을 임명하는 인력운영 방식이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높은 퇴사율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본안심리를 지원하는 헌법연구관의 현원을 확대하는 등 헌법연구관 인력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우수인력 확보와 연구성과 제고 등을 위해 책임연구관(원)은 높은 보수 지급이 가능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책임연구관(원)의 처우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연구원 팀장급에 헌법연구관 배치가 필요함 ○ 재판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재판연구원에 배치된 헌법연구관 축소보다는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근무할 헌법연구관 정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함 -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적시에 충분한 헌법연구관 인력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연도 중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수는 2012년 848건에서 2021년 1,518건으로 증가하였고, 2년이 넘는 미제사건 수 역시 62건에서 28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심판청구 접수건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제한된 심판지원 인력으로 심판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보이나, 청구인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	제도개선	○ 재판소에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연구부 개편을 통한 투트랙 제도 도입, 동종사건 병합 심리, 장기미제 사건목록에 대한 재판부 통지 등의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헌법재판은 대세효가 있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선진 외국의 헌법재판판례 및 입법례 조사, 국내외의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화하는 측면이 있음 -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5년 넘게 심리중인 사건은 총 17건임(이 중 2022. 7. 21. 8건 선고)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사건심리의 과도한 장기화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을 경과한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등 내부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관의 의견 취합 등의 과정이 필요한 바, 기본적으로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향후에도 사건처리 지연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정비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 [지적사항] 재판자료확충 내역사업에는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등 각종 간행물의 발간을 위해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8,100만원만이 집행되어(집행률 68.0%)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등 간행물에 대한 필수적 수요를 재검토하여 그 물량을 최소화하고, 관련 예산의 과다한 불용률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제도개선	○ 간행물 수요 재검토를 통해 2022년 ‘헌법재판자료집’의 발간을 중단하였고, 2023년 간행물 발간비 예산*은 실행 소요를 감안하여 2021년 대비 2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음 * 발간예산(한시사업 제외): (‘21년) 120 → (‘22년) 110 → (‘23년) 96백만원 ○ 향후에도 간행물의 활용 현황 및 실행 수요 조사를 통해 발간량을 조정하고 발간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겠음
○ [지적사항]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헌법재판연구원 10년사」와 「헌법재판연구원 10주년 기념 영어논문집」간 관련 사업은 예산안 편성 시에 예	제도개선	○ 2023년 기본경비 편성 시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필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 협의 편성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상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역변경과 세목조정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 약화를 초래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향후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차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세목조정 등 예산조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 향후에도 예산 편성 시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필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 위탁운영’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 중 전자헌법센터는 사건 등의 제출·송달·기록 열람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헌법재판 사건의 전자접수율이 50%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고, 전자송달의 경우 정부 간의 문서유통을 제외하면 4,577건으로 우편송달 건수 5,710건에 미치지 못하며, 기존 우편송달을 전자송달로 전환 신청한 건수의 증가세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소자·고령자 등의 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편의성 및 이용안내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를 추진하여 전자헌법재판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홍보리플릿 제작 및 배부(법원, 검찰청 등 427개소), 지하철 와이드컬러 광고 실시, 민원상담(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전자접수 이용 권유 등 안내를 통해 심판사건의 전자접수 및 송달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였음 ○ 또한,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성을 개선하였고, 청구서 작성을 대화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민원상담 가이드(챗봇 서비스)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는바, 향후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2020년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과다한 인건비 불용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불용이 점증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예산으로 인건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할 경우 예산운용의 효율이 저하될 수 밖에 없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인력에 대한 총원계획을 보다 충실히 수립하는 한편 실제 소요인력 규모 및 집행액을 반영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 운용의 적정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	시정	○ 인건비의 경우 2022년도 예산요구 시 전년도 요구액 대비 780백만원을 감액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동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사시 실소요를 감안하여 추가로 120백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음 ○ 향후에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소요 예측과 검토를 통해 불용률을 줄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통해 처리한 사건의 경우 평균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심판사건 처리지연의 문제가 상당함 - 최근 5년간(2016~2020년) 본안심리 처리사건 2,519건 중 16.1%만이 법정 처리기한(6개월)을 충족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처리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	시정	○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부 인력 확충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심판업무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처 조직개편 등을 실시하였음 - 실제 사건 심리에 관여하는 연구인력 증원을 위해 2022년 헌법연구관 4명을 증원하였고, 재판부의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한 심판업무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무처 심판지원실에 5급 1명을 충원하였음 ○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통해 심판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리가 제한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의 처리지연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사무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022년에도 연구인력 충원을 위한 인력증원 요청을 할 예정임
○ [지적사항] 헌법연구관 정원 67인 중 9인(헌원 4인)은 헌법재판연구원에 소속되어 심판사건 심리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나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헌법연구관의 본래 임무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이고, 특히 헌법재판연구원에 소속된 헌법연구관은 중견급 헌법연구관으로 사건의 심리를 위한 조사·연구 업무수행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이므로, 중장기적인 연구나 교육보다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에 집중적으로 배치·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 인력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헌법재판연구원에 배정된 헌법연구관 정원(9인)은 심판사건의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부의 헌법연구관 정원(58인)과 별도로 편성된 정원임 - 앞으로 헌법재판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 [지적사항] 특정인들의 헌법소원 남발로 헌법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고 일반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등 그 문제가 상당함	제도개선	○ 2021년 9월부터 남소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재판부·연구부·사무처가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공탁금납입, 과태료부과, 인지첩부, 전자소송 사용 정지, 사용자 등록 말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한해에 같은 사람이 100건 이상을 청구한 남소 건은 2016년 260건에서 2020년 1,103건으로 크게 증가(2016년 대비 324.2% 증가) - 2020년 전체 헌법소원 3,216건 중 특정인에 의한 남소가 34.3%(1,103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남소 건의 경우 대부분(2020년의 경우 99.9%)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특정인에 의한 남소로 인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헌법소원 제도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탁제도의 도입 등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등 여러 가지 남소방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이나 권리 남용 등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신설하기로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지적사항]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헌법재판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로서 원고가 게재된 자에게 일정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헌법 관련 등재학술지의 경우 오히려 저자에게 논문게재료를 납부받고 있고, 등재학술지를 발행하는 타 국가기관은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 지급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과도한 원고료 지급의 문제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타 등재학술지의 원고료 지급 사례를 고려하여	시정	○ 2022년부터 원고료를 1건당 50만원 감액(150→100만원)하여 예산 편성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헌법재판연구’ 원고료의 추가적인 감액을 검토하는 등 과도한 원고료 지급 관행을 개선할 것		
○ [지적사항] 국외통신원 직무수당을 예산 편성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고, 국외통신원 보고서 주제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무관하게 국외통신원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작성한 보고서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인터넷이나 해외 파견 연구원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업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 기준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고, ‘국외통신원 운영지원’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제도개선	○ 2020년 예산에 국외통신원 직무수당 인상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예산과 규정의 불일치가 있었는데, 2021년도부터 인상된 직무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어 이에 따라 직무수당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외통신원은 국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의 헌법 관련 논의를 신속히 파악하여 향후 연구원에서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수행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국외통신원 보고서를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에 수록하여 뉴스레터 형식으로 국가기관, 법조인 등 2만 4천여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등 제도유지의 필요성이 큼
○ [지적사항]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임차료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에 따른 적정면적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공간의 사용 빈도도 높지 않아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음	제도개선	○ 헌법재판연구원은 임차료 과다 및 공간 사용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청사 이전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단기적 방안, 사무실 공간 축소] 임차료 절감을 위해 사용공간의 축소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공사기간(5개월) 업무 대체 공간 마련 등의 비용 지출과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연구원은 공간 사용의 효율화를 통한 임차 공간을 축 소를 포함하여 과다한 임차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청사 이전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것		는 점에서 실행에 어려움이 있음 - [중·장기적 방안, 청사 이전] 한국자 산관리공사의 율현동 통합청사 사업* (미활용 국유지를 개발하여 공공기관 에 공급)에 입주의향서 및 수요조사 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이외에도 비 강남 지역의 국·공유지 건물로의 이 전 등에 대해서도 검토·조사 중임
○ [지적사항] 최근 10년간(2011~2020년) 헌법재판소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했던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2 개 업체가 전체 정보화사업 계약금액 (236억 300만원)의 81.4%에 해당하는 192억 700만원의 정보화사업 계약을 수주 하여 계약편중의 문제가 상당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입찰 공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설명회 등 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접근비용을 최 소화하며, 계약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정보화예산의 계약편중을 완화하고 건 전한 경쟁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제도개선	○ 30일 이상의 입찰공고기간 부여, 사업 설명회 개최 등 그간 특정업체에 대 한 계약편중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바, 최근 특정업체에 대한 계 약 편중이 상당히 완화되었음 - 지적사항에서 거론된 2개 업체와의 최근 3년간(2019~2021) 계약 건수는 2 건에 그쳤음. 참고로 동기간 정보화 사업 관련 총 계약 건수는 13건임 ○ 앞으로도 정보화사업에 신규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입찰공 고기간 부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적정한 사업예산 확보 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심판사건의 전자적 접수 및 송달 등을 위해 전자헌법재판센터를 구 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2010. 3월부터 공식운영), 장기간의 전자헌법재판센터	제도개선	○ 홍보리플릿 제작 및 배부(법원, 검찰 청 등 426개소), 지하철 와이드컬러 광고 실시, 민원상담 등을 통한 전자 접수 안내 등 심판사건의 전자접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전자접수율은 51.2%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특히,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경우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즉 국가기관 간 사건의 제청·접수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사건이 전적으로 서면으로만 접수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야기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심판사건 접수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자접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		및 송달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였음 ○ 또한,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성을 개선하였고, 청구서 작성을 대화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민원상담 가이드를 구축 중에 있어 향후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법원의 경우 독자적인 행정망을 사용하여 타 기관과의 전자문서의 발송과 접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적사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고통 분담 취지로 3차 추경을 통해 기본경비 예산을 감액하였으나 지출절감 노력 없이 내역변경 등을 통해 다시 증액함으로써 추경 감액 취지에 어긋난 예산집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증액하였으나 증액 금액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예산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조정이나 불필요한 예산조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집행총괄부서의 관리 강화를 통해 2021회계연도 4분기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예산조정을 예방하였음 * 3회 점검(2021년 9·10·11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 국선대리인 보수 사업은 최근 4년간 집행률이 70% 수준으로 저조하고, 국선대리인 담당 심판사건의 인용률이 사선대리인 사건과 비교하여 낮은 문제가 있음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건수는 증가(2016년 대비 67.4%)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선임 결정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최근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 및 추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국선대리인 사건의 인용률 제고를 위해 국선대리인 활동 환경 조성 및 선임 결정률 향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2021년 국선대리인보수 예산을 전년 대비 18백만원 감액편성(127→109백만원)하였으며, 2021년도 동예산의 집행률은 91.3%(100백만원 집행)로 적절한 수준임 ○ 2021년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국선대리인 4명에게 모범국선대리인 표창을 수여하였고, 전문성, 경력, 업무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2022년 국선대리인 예정자 70명을 선정함 - 향후에도 국선대리인단 선정방식 개선, 국선대리인 초청연수, 모범국선대리인 포상 등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지적사항] 참고인 연구비 지급 시 추가 조사·연구 또는 연구충실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고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의견을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참고인 중 법조인 비율이 높은 문제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참고인 연구비 지급 시 추가조사·연구 및 연구충	제도개선	○ 헌법재판소는 참고인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019년 참고인 연구비를 인상한 바 있음 - 연구비 인상 후 내용의 충실도 등을 참작하여 추가 지급한 사례는 없으나 향후에는 차등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급할 예정임 ○ 참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닌 실무례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추천의뢰를 하여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실도를 감안하여 지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재판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변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적극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		- '17년부터 '21년까지 선정한 참고인 35명 중에 법조인은 18명이며 비법조인은 17명으로 법조인이 절반 정도임 - 이는 사실관계 확정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 민·형사재판에 비해 헌법재판은 법리적 검토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하며, 법조인들을 지정할 때에도 헌법, 의료법, 형법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들을 선정함
○ [지적사항] 기존 본관 등 청사 노후시설 보완공사 예산의 집행 잔액(1,359만원)을 신축 청사(2020.4. 준공)의 용도 개선을 위한 4건의 공사에 집행함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노후시설 보완공사 예산을 신축 청사 시설 공사에 사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예산편성의 목적 외 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2020년 신규 채용한 공무원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부담금 집행이 저조(73.9%, 66.7%)한데, 이는 청사 증축사업이 지연되어 2020년 4월 완공되었음에도 1월 1일부터 신규인원이 근무할 수 있다는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원인으로 보임	주의	○ 2020년도에 헌법재판소 증축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2021년도부터 공무원 근로자 인력 수요와 해당 예산 편성상의 불일치를 조정하여 동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였음 * 2021년도 본부운영지원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집행률: 95%, 85%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주의할 것		
○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내역을 보면 유찰 등의 이유로 11건의 용역 중 9건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하였음 - 최근 5년간 3차례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 발전 및 재판소 정책개발이라는 사업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연구용역 유찰이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해소하고 헌법재판소 자체의 정책개발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무응찰·단독응찰 등 입찰결과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음 - 앞으로도 다양한 용역수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과 동시에 홍보를 강화하고, 관심도 제고를 위해 연구주제 상시 공모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주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아시아재판소연합' 관련 정책연구용역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기관인 재판소가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교류업무 정책 추진방향과 외국 사례조사 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재판소 자체 정책개발과 무관하지 않음 ○ 향후에도 국회 지적사항 등을 유념하여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 시 정책연구용역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헌법재판소가 청소년 등을 위한 헌법 교양서로 제작하고 있는 ‘알기 쉬운 헌법’은 제작 시점(2016년)과 제공 시점(2020년)의 차이로 인한 헌법 해석과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시의성 있는 개론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알기 쉬운 헌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	주의	○ ‘알기 쉬운 헌법’은 2012년에 최초 제작되고 2016년 12월에 개정하여 2017년 서울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국 각 지역에 순차적으로 배포하는 사업임 - 해당 기간(2017~2021년)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배부되어 발간 이후에 발생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신규 법령 내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동사업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되었고, 이후 추가 배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신 헌법 재판소 결정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구성 및 내용을 전면개정 후 사업을 진행하겠음
○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공보·헌법재판소판례집·헌법논총 발간비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함(2020년의 경우 각각 60.9%, 66.7%, 56.3%) - 헌법논총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논문 투고 건수가 매년 감소 추세인 것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재판자료 확충 사업의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논총의 경	제도개선	○ 2022년 재판자료확충 사업의 발간예산 편성 시 실집행 소요를 감안하여 10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음 * 발간예산: (21년) 120 → (22년) 110백만원 ○ 헌법논총 투고 활성화를 위해 투고자격 및 안내 대상기관 확대, 특집주제 추가 선정 등 다양한 논문 투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우 투고 장려 등을 통해 발간비 집행을 촉진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감축하 는 방안을 고려할 것		

2.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리											미 제	
		계	전 년 미 제	금 년 접 수	계	결정									취 하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2014	합계	2,712	743	1,969	1,888	11	15	3		31	104	151	1,550		23	824	
	위헌법률	64	38	26	14	3	1	3			6		1			50	
	정당해산	1	1		1					1							
	권한쟁의	5	4	1	2								1		1	3	
	헌법소원	계	2,642	700	1,942	1,871	8	14			30	98	151	1,548		22	771
	§68①	1,808	368	1,440	1,368	3	11			30		151	1,155		18	440	
§68②	834	332	502	503	5	3				98		393		4	331		
2015	합계	2,683	824	1,859	1,937	47	15			48	176	203	1,421	1	26	746	
	위헌법률	87	50	37	44	21	1				20		2			43	
	정당해산	1		1												1	
	권한쟁의	11	3	8	2					1			1			9	
	헌법소원	계	2,584	771	1,813	1,891	26	14			47	156	203	1,418	1	26	693
	§68①	1,765	440	1,325	1,375	6	10			47		203	1,090	1	18	390	
§68②	819	331	488	516	20	4				156		328		8	303		
2016	합계	2,697	746	1,951	1,976	33	9	1		58	179	214	1,418	3	61	721	
	위헌법률	63	43	20	27	12	2				4		5		4	36	
	탄핵	1		1												1	
	정당해산	1	1		1								1				
	권한쟁의	18	9	9	5								3		2	13	
	헌법소원	계	2,614	693	1,921	1,943	21	7	1		58	175	214	1,409	3	55	671
	§68①	1,769	390	1,379	1,373	17	2	1		58		214	1,050	2	29	396	
	§68②	845	303	542	570	4	5				175		359	1	26	275	

구 분		접수			처리											미 제
		계	전 년 미 제	금 년 접 수	계	결정									취 하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2017	합계	3,347	721	2,626	2,425	4	1			38	116	177	2,064		25	922
	위헌법률 탄핵	71	36	35	11	1					10					60
	권한쟁의	1	1		1					1						
		15	13	2	2								2			13
17	헌법소원 계	3,260	671	2,589	2,411	3	1			37	106	177	2,062		25	849
	§68①	2,383	396	1,987	1,873	1	1			37		177	1,633		24	510
	§68②	877	275	602	538	2					106		429		1	339
2018	합계	3,349	922	2,427	2,447	57	59			52	108	271	1,850		50	902
	위헌법률 권한쟁의	77	60	17	39	8	18				10		3			38
		15	13	2	5								2		3	10
	헌법소원 계	3,257	849	2,408	2,403	49	41			52	98	271	1,845		47	854
	§68①	2,329	510	1,819	1,824	5	10			52		271	1,441		45	505
	§68②	928	339	589	579	44	31				98		404		2	349
2019	합계	3,632	902	2,730	2,519	8	7			34	142	206	2,076		46	1,113
	위헌법률 권한쟁의	69	38	31	18	5	1				11		1			51
		16	10	6	5					2		2	1			11
	헌법소원 계	3,547	854	2,693	2,496	3	6			32	131	204	2,074		46	1,051
	§68①	2,567	505	2,062	1,946	3	4			32		204	1,663		40	621
	§68②	980	349	631	550		2				131		411		6	430
2020	합계	4,354	1,113	3,241	3,042	10	7			64	162	230	2,515		54	1,312
	위헌법률 권한쟁의	71	51	20	20	7	4				8				1	51
		16	11	5	11							5	6			5
	헌법소원 계	4,267	1,051	3,216	3,011	3	3			64	154	225	2,509		53	1,256
	§68①	3,093	621	2,472	2,283	1	2			64		225	1,946		45	810
	§68②	1,174	430	744	728	2	1				154		563		8	446

구 분		접수			처리											미 제
		계	전 년 미 제	금 년 접 수	계	결정									취 하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2021	합계	4,139	1,312	2,827	2,621	15	4			46	126	217	2,161		52	1,518
	위헌법률 탄핵	89	51	38	19	6	2				9		2			70
	권한쟁의	1		1	1								1			
	헌법소원	7	5	2	1							1				6
	계	4,042	1,256	2,786	2,600	9	2			46	117	216	2,158		52	1,442
	§68①	3,011	810	2,201	2,105	6	1			46		216	1,791		45	906
2022	§68②	1,031	446	585	495	3	1				117		367		7	536
	합계	4,347	1,518	2,829	2,675	26	30			30	113	196	2,241		39	1,672
	위헌법률 탄핵	113	70	43	37	17	8				7		2		3	76
	권한쟁의	11	6	5	4					1		1	2			7
	헌법소원	4,223	1,442	2,781	2,634	9	22			29	106	195	2,237		36	1,589
	계	3,228	906	2,322	2,208	5	11			29	1	195	1,935		32	1,020
2023	§68②	995	536	459	426	4	11				105		302		4	569
	합계	4,263	1,672	2,591	2,659	38	14			50	220	253	2,042		42	1,604
	위헌법률 탄핵	101	76	25	48	25	7				11		2		3	53
	권한쟁의	4		4	1							1				3
	헌법소원	17	7	10	8					2		2	4			9
	계	4,141	1,589	2,552	2,602	13	7			48	209	250	2,036		39	1,539
2024	§68①	2,955	1,020	1,935	1,999	3	5			48	6	250	1,659		28	956
	§68②	1,186	569	617	603	10	2				203		377		11	583

자료: 헌법재판소

3. 2023년도에 처리된 2022. 12. 31. 기준 4년 경과 사건 목록

연 번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종국결과	심리 기간	주요쟁점
1	'14.03.31.	2014헌마277	기소유예처분취소	'23.02.23. 인용	약 8년 10개월	MBC 노조원의 업무방해죄 적용 기소 유예처분 취소 여부
2	'17.01.12.	2017헌바42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09.26. 합헌, 각하	약 6년 8개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
3	'17.04.11.	2017헌가1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23.10.26. 합헌	약 6년 6개월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4	'17.05.26.	2017헌마604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4. 부분 등 위헌확인	'23.02.23. 기각	약 5년 8개월	수석교사 교육연구사 선발 응시 금지 를 규정한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4. 부 분 등이 수석교사인 청구인의 공무담 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5	'17.07.14.	2017헌바29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09.26. 합헌	약 6년 2개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
6	'17.07.24.	2017헌바357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23.10.26. 각하	약 6년 3개월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7	'17.07.27.	2017헌마841	기소유예처분취소	'23.10.26. 인용	약 6년 2개월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하 였음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 소 여부
8	'17.07.31.	2017헌마852	기소유예처분취소	'23.10.26. 인용	약 6년 2개월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하 였음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 소 여부
9	'17.08.04.	2017헌바36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09.26. 합헌	약 6년 1개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
10	'17.08.14.	2017헌마888	기소유예처분취소	'23.10.26. 인용	약 6년 2개월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하 였음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 소 여부
11	'17.08.25.	2017헌가27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3.09.26. 합헌	약 6년 1개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
12	'17.09.14.	2017헌마103 3	기소유예처분취소	'23.10.26. 인용	약 6년 1개월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하 였음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 소 여부
13	'17.09.19.	2017헌바414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23.10.26. 각하	약 6년 1개월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4	'17.10.10.	2017헌바432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3.09.26. 합헌, 각하	약 5년 11개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

연 번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종국결과	심리 기간	주요쟁점
15	'17.10.10.	2017헌바431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3.09.26. 합헌	약 5년 11개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
16	'17.10.19.	2017헌마116 9	기소유예처분취소	'23.10.26. 인용	약 6년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하 였음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 소 여부
17	'17.10.23.	2017헌바443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09.26. 합헌, 각하	약 5년 11개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
18	'17.11.15.	2017헌마125 7	기소유예처분취소	'23.10.26. 인용	약 5년 11개월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하 였음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 소 여부
19	'17.12.07.	2017헌바501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23.10.26. 각하	약 5년 10개월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0	'17.12.27.	2017헌마137 6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23.07.20. 기각	약 5년 6개월	특정 공공기관이 한 입찰참가자자격제 한의 효력을 전 공공영역으로 확장적 용하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 여부
21	'18.02.19.	2018헌바11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09.26. 합헌, 각하	약 5년 7개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
22	'18.03.07.	2018헌마246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23.02.23. 기각	약 4년 11개월	집단민원현장 배치 전 신청 및 허가를 규정한 경비업법이 청구인의 직업수행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3	'18.04.04.	2018헌마35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23.10.26. 기각, 각하	약 5년 6개월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하고, 여성 에게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24	'18.04.17.	2018헌마402	기소유예처분취소	'23.10.26. 인용	약 5년 6개월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하 였음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 소 여부
25	'18.05.04.	2018헌마46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23.03.23. 기각	약 4년 10개월	국회의원의 소개 또는 일정수 동의 없 이 청원을 제출할 수 없게 한 국회법 이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26	'18.05.29.	2018헌바225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3.09.26. 합헌, 각하	약 5년 3개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
27	'18.06.10.	2018헌마596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23.03.23. 기각	약 4년 9개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 출할 수 없게 한 지방자치법이 청구인 의 청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연 번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종국결과	심리 기간	주요쟁점
28	'18.06.25.	2018헌바240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23.02.23. 합헌	약 4년 7개월	육아휴직 종료후 12개월 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9	'18.06.29.	2018헌바244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23.08.31. 각하	약 5년 2개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국제관습 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이 사 건 국제관습법의 포섭·적용에 관한 법 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임
30	'18.08.27.	2018헌마872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3.10.26. 기각, 각하	약 5년 1개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 이 사건 심의조항이 국·공립대학 교 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 해하는지 여부
31	'18.09.18.	2018헌바385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23.03.23. 합헌	약 4년 6개월	국립학교가 정보공개법상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 행정심판 인용재 결에 기속되도록 한 행정심판법이 청 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32	'18.09.21.	2018헌마968	기소유예처분취소	'23.05.25. 기각	약 4년 8개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방조사 건 기소유예처분 취소 여부
33	'18.10.26.	2018헌바419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23.12.21. 합헌	약 5년 1개월	심판대상조항이 상고장각하명령 후 인 지보정의 경우에 상고장각하명령을 취 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 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4	'18.11.02.	2018헌바43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3.03.23. 헌법 불합치, 각하	약 4년 4개월	의료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이 의료기관 개설자 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5	'18.11.12.	2018헌바443	형법 제355조 제1항 위헌소원	'23.10.26. 합헌	약 4년 11개월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그 반환을 거 부한 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성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36	'18.11.19.	2018헌마111 6	불기소처분취소	'23.03.23. 기각	약 4년 4개월	아동학대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7	'18.11.27.	2018헌바469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23.09.26. 각하	약 4년 9개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 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 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하는 행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8	'18.11.28.	2018헌바470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23.03.23. 합헌, 각하	약 4년 3개월	구 형법 비번호사 처벌조항이 과잉금 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연 번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종국결과	심리 기간	주요쟁점
39	'18.12.05.	2018헌바487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08.31. 각하	약 4년 8개월	매도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40	'18.12.20.	2018헌바513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23.02.23. 합헌	약 4년 2개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소항이 형종상항금지조항으로 개정되면서 종전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1	'18.12.27.	2018헌마121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23.06.29. 기각	약 4년 6개월	법원 격리시절 내에서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가 구속피고인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자료: 헌법재판소